

비교법제분석 06-03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2006. 8. 31.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Laws and policies surrounding prostitution in
Europe

연구자 : 이 은 애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Lee, Eun Ae

김 재 광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Kim, Jae Kwang

목 차

국문 초록	7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 2 장 성매매 관련 법제의 논리와 실제	15
제 1 절 성매매 관련 법제의 논리	16
1. 원인론적 입장	16
2. 여성주의적 입장	23
3. 사회보호적 입장	29
4. 성매매 관련 담론에 따른 논리적 입법 결과	33
제 2 절 성매매 관련 법제의 실제	35
1. 금지주의	35
2. 폐지주의	36
3. 규제주의	38
제 3 절 유럽 10개국의 성매매 관련 법제의 분류	40
제 3 장 폐지주의에 기반한 성매매 관련 법률	47

제 1 절 고전적 폐지주의	48
1. 핀란드	48
2. 이탈리아	51
제 2 절 급진적 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폐지주의 - 스웨덴	54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규제 및 보호	55
2.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대한 규제	57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59
4. 구매자 처벌법으로 인한 효과	59
제 3 절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영향을 받은 폐지주의 - 스페인	62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규제	63
2.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대한 규제	64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을 둘러싼 규제	65
제 4 절 질서유지적 관점의 영향을 받은 폐지주의 입법	65
1.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중심으로)	66
2. 프랑스	72
3. 아일랜드	77
제 4 장 규제주의에 기반한 성매매 관련 법률	81
제 1 절 고전적 규제주의	81
1. 독일	81
2. 오스트리아	85

제 2 절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영향을 받은 규제주의 - 네덜란드	90
1. 성매매에 대한 규제	91
2. 성매매 관련 착취에 관한 규제	91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규제	93
제 5 장 유럽의 성매매 관련 법률 비교	95
제 1 절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규제	95
제 2 절 성매매 관련 제 3자에 대한 규제	96
1. 착취 및 성매매 강요	98
2. 인신매매	100
3. 미성년자 성매매	105
제 3 절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106
제 6 장 결 론	109
참 고 문 헌	113

그림목차

【그림 1. 성매매 관련 담론들과 그에 따른 국가적 개입의 근거】	34
--------------------------------------	----

표 목차

【표 1. 성매매 법제의 이론적 분류】	41
【표 2. 성매매 법제의 실제적 분류】	45
【표 4. 성매매 관련 착취에 대한 해석】	97
【표 5. 성매매 강요 및 착취에 대한 각국의 형벌 규정】	99
【표 6.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의 형벌 규정】	103
【표 7.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108

국문초록

2004년 한국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실제 위 두 특별법은 성매매 관련 처벌을 강화하였을 뿐, 성매매를 범죄로 인정하고 구매자, 판매자, 알선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제들과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및 경찰의 더욱 강력한 단속과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 위 두 특별법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주장, 성매매도 직업의 하나이므로 범죄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등이 펼쳐졌으나 기존의 법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맺어졌다. 그러나 성매매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성매매 관련 법제는 지속적으로 개선과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 10개국의 성매매 관련 법제도의 철학적 바탕과 그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연구목적이다. 성매매 관련 법제는 성매매에 대한 원인 및 현상에 대한 철학적 사고의 논리적 결과물이다. 성매매를 ‘근절해야 할 범죄’로 보는 입장에서는 성판매, 성구매, 알선, 매개 등을 모두 처벌하는 금지주의를 취하는 반면,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국가가 직접 허가 및 관리하는 규제주의를, 성매매 종사자들의 착취와 억압에 관심을 갖고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성매매 관련 착취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폐지주의를 주장한다. 이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유럽 10개국은 규제주의 또는 폐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으나 개개의 성매매 관련 법률은 위와 같은 분류에 정확히 일치 하지는 않는다. 최근 성매매 관련 활발한 담론에의 대응하면서 법제를 개선하기도 하고, 각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성매매 관련 법제들이 변화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 각국의 성매매 관련 법제의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성매매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성매매 관련 법제의 추세와 성향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이론적 근거와 예시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의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개괄한 후,

2장에서는 성매매 법제 논리와 그 실재에 대해 알아보겠다. 성매매 법제의 논리에는 성매매의 원인을 찾은 원인론적 입장, 성매매의 현상에 관심을 갖는 여성주의적 입장, 성매매가 사회에 주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 사회보호적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논리에 따른 다양한 성매매 법제들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의 성매매 법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류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는 10개국중 폐지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관점들을 보완하고 있는 스웨덴,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이태리, 핀란드의 법제를 살펴보고, 4장에서는 규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의 법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10개국의 성매매 관련 법률들을 성매매 개인의 규제에 대한 법률, 성매매 관련 착취에 대한 법률,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비교 분석 할 것이며,

6장에서는 결론으로 보고서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ABSTRACT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Act was revised and implemented in 2004. The act provoked hot debate, including assertions that a severe crackdown on prostitution is required to eradicate it, or that the new act violates the rights of people involved in prostitution to live that way. Others claim that prostitution should not be criminalised as it is a normal job. Such remarks were made despite there be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former act on prostitution in terms of regarding all behaviour involved in prostitution as crimes, though with the new act having more severe punishment against prostitution.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surrounding prostitution of ten countries in Europe. The legislative system of prostitution results from the philosophical logic of the reason and phenomenon on prostitution. Prohibitionists suggest that all kinds of behaviour related to prostitution should be criminalised and punished because prostitution is a social evil which should be eradicated. Regulations and controls on prostitution by government are regarded as important by regulationists, who view prostitution as a necessary evil in society. According to abolitionists, governments should focus on the suppression and exploitation from which prostitutes have been suffering.

Although the ten European countries considered in this article are based on regulationism and abolitionism, the contents of their acts and laws do not clearly correspond with the above classification. The poor correlation is the result of changing their acts on prostitution in reaction to the

ABSTRACT

intense discourse surrounding prostitution as well as influencing each other's legislation.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system on prostitution, the classification of each country's legislative system, as well as comparison of each country's provision of the act, is important. This article will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actical instances to find a solution to prostitution in South Korea by giving a prediction of tendency about the recent enactment related prostitution in Europe.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성매매¹⁾와 관련한 담론들은 그 바탕이 되는 철학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다. 성매매를 범죄와 같은 사회적 일탈행동으로 보면서 그 원인을 찾는 시각에서부터 성매매를 남성위주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하면서 그 종사자들의 보호에 관심을 갖는 시각까지 학문분야 또는 정치분야에서 다양한 담론들을 생성하면서 그에 따른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 성매매는 사회에서 비난받아야 할 행동인지, 형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범죄인지, 성매매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은 성매매와 관련된 담론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질문 일 것이다. 이외에도 성매매에 대한 법률은 많은 사회적 현상과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 가장 적절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성매매를 인정한다면 국가 개입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 것인지, 성매매 종사자의 착취를 막기 위해 어디까지 범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을 없애기 위한 국가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답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법률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가가 성매매의 여지를 인정하고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만을 처벌하거나 성매매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성매매 종사자, 구매자, 관련된 제 3자

1) ‘성매매’의 용어는 윤락, 매춘, 매매춘 등의 용어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기존에 윤락, 매춘 등의 용어가 성매매에서 판매하는 입장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에 따라 매매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나, 성매매 종사자들이 겪는 착취 및 폭력을 미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성매매”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구분없이 “prostitution”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 성구매자, 성판매자 또는 성매매 종사자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들을 모두 처벌하면서 성매매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 성매매를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악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는 근절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착취 및 폭력 역시 여전히 우려할 만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강력한 금지주의적 법집행은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다.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적 접근법이 한계점을 노출하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성매매와 그 관련된 사회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방안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와 성매매에 부수되는 문제들의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각국의 법률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유럽의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유럽에서 성매매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발전하여 왔으며 성매매 관련 법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각국은 이러한 법률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각국의 성매매 관련 법률이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이다.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법적 태도와 그 실제에 대한 이해는 추후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이론적 근거와 예시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글은 성매매 관련 법률과 그 법률의 철학적 배경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성매매는 사회학적으로 또는 범죄학적으로 다양한 정의를 가질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금전 등의 대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이지 않은 성의 판매 및 구매”라는 법적인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성매매 관련 법률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분포되어 규정되

어 있거나 특별법 등에 의해 규정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에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법률 및 성매매 관련 착취 및 폭력에 대한 법률,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규제를 하는 법률 등을 포괄하여 다루기로 한다. 특히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성매매 관련 법률을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규제, 성매매와 관련된 착취에 대한 규제 그리고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연구의 대상은 유럽 10개국의 성매매 관련 법률이다. 한국이 일제 시대 이후 성매매를 범죄 및 일탈행위로 보고 범죄로 규정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 반면, 유럽의 경우 전통적으로 성매매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성매매를 직접 관리하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착취와 폭력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는 등 성매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활발한 여성주의 활동의 영향을 받아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법개정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는 점과 EU 성립 이후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 관련 법률을 상호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개정하고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가치가 있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EU 가입국 중 10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를 선정하였다. 위 10개국은 성매매 관련 법률의 분류를 기준으로 각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나라와 성매매와 관련한 특별한 법률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 위주로 선정되었다.

이 글의 연구 방법은 비교 연구이다. 비교연구는 어떤 현상들이 동일하게, 또는 상이하게 다루어지는지를 먼저 비교 할 수 있고, 상이하게 다루어지는 면들을 살펴보면 다른 배경들을 가진 상태에서 같은 문제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되고 있는지는 알아볼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는 연구 방법이다²⁾. 즉, 성매매라는 동일한 현상이 역사적으로

2) Sapsford, R and Jupp. V. (2006),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London: Open University

제1장 서론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동시에 각국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유럽 10개국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성매매 관련한 담론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담론들을 따라 각국이 어떠한 성매매 법률을 제정했는지를 알아보고, 분류화 함으로써 각국의 상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제 2 장 성매매 관련 법제의 논리와 실제

이 장에서는 성매매 입법의 논리적 배경이 되고 있는 담론들을 소개하고, 담론에 따라 달라지는 성매매 입법의 다양한 형태들을 소개할 것이다. 성매매와 관련한 입법은 성매매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떠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원인론적 입장과, 성매매가 “남성”이 “여성”의 성을 사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사회적 성의 의미과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여성주의적 입장, 그리고 성매매 자체의 도덕적 판단 보다는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 사회보호적 입장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원인론적 담론이 범죄학 분야의 학문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였다면, 여성주의적 담론은 60년대 이후 여성주의가 분화하기 시작하면서 활발해진 여성주의 운동의 관점에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보호적 입장은 위의 두 철학적이거나 학문적인 담론과 달리 실제 법집행의 가능성과 필요에 의해 시작된 담론이다.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을 바탕으로 성매매 관련 입법체계가 형성되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입법목적을 다르게 지닌다. 원인론적 입장과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성매매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는 입장과, 사회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없는 다른 사회행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입장으로 대별될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 성매매를 제지, 예방, 단속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하는데에 초점을 둔다. 이에 반해 사회보호적 입장에서는 성매매 자체에 대한 법률적 판단 및 성매매 개인에 대한 관심 보다는, 성매매로 인한 악영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제 1 절 성매매 관련 법제의 논리

1. 원인론적 입장

성매매를 바라보는 가장 고전적이고도 오래된 담론은 바로 원인론적 입장이다. 유럽에서 18세기 후반 성병이 창궐하면서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을 때 성매매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어떠한 여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³⁾. 성매매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성매매를 개인이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 의해 선택이 강요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역시 가능하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병리현상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한다는 병리학적 원인론이나 사회적인 고립 및 범죄의 하위문화에 영향을 받은 개인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다는 사회적 원인론은 성매매가 개인의 자발적이고도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위와 같은 원인을 근거로 성매매가 “선택되어 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가난, 경제적 곤란, 사회 보장제도의 부재로 성매매를 돈을 벌수 있는 수단으로서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경제적 원인론에서는 합리적 개인이 자신의 선택 가능한 범주 내에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1) 병리학적 원인론

병리학적 원인론에서는 성매매를 설명하면서 사회, 문화, 제도 등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고 오직 개인의 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의 비정상적이거나 병리학적 원인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만들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위와 같은 병리적 원인을 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매매의 원인에 대한 최초의 범죄학적 설명은 Lombroso와

3) 이는 범죄학에서 최초로 실증주의 범죄학이 탄생하면서,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자 했던 시기와 비슷하다.

Ferrero의 연구이다. 그들은 격세유전과 사회적 유전의 법칙을 적용하여 성매매의 원인을 연구하는데,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의 성향”은 진화의 역행이라고 주장한다⁴⁾. 1985년의 여성 범죄자들을 연구한 “The Female Offender”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은 그들의 체중, 신장, 뇌의 크기, 신경 구조, 지능 및 도덕 감성지수가 ‘보통의 여성’들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며, 특히 다른 남성 범죄자들과는 나태, 정신적 고통, 알코올 중독과 같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즉,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유전적 퇴보에서 비롯된 병리적 현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이다.

Gluecks(1934)는 Lombroso와 Ferrero가 설명한 개인의 병리학적 특성에 사회적인 요소들을 보완한다. 그는 개인의 병리학적 특성이 성매매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병리학적 특성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에서 탐색한다. Gluecks에 따르면 이러한 병리학적 특성은 성장과정에서의 경제적 빈곤과 불우한 가족생활에서 비롯된다. 불우한 가정생활은 여성들에게 정신박약, 정신병적 성질과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게 하고 이는 문란한 성생활의 원인이 되며, 이것이 곧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Benjamin과 Masters (1964)는 자발적 성매매와 강요된 성매매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자발적 성매매가 여성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합리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강요된 성매매는 여성들의 신경 정신적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성장과정에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입은 여성들이 자신의 피학적 성향으로 인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된다⁵⁾.

병리학적 원인론은 인간의 행동이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결과이며, 범죄성향은 개인의 탐욕적 성향에서 발생한다는 고전적 범

4) Lombroso, C. and Ferrero, W. (1895), *The Female Offender*, London: Fisher Unwin

5) Benjamin, H and R. Masters (1964), *Prostitution and Morality: A definitive report on the prostitute in contemporary society and an analysis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suppression of prostitution*, London: Souvenir Press

죄학의 명제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한다. 범죄자들에 대한 병리적 현상을 경험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범죄성향은 개인의 생리적이거나 정신적인 병리요소로 인해 “선택되어 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은 근본적으로 “생리적이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다른 여성들과 다른 존재인 것이다. 성매매 여성은 특정한 개인의 비정상적 특징이 여성을 성매매에 종사토록 만들고,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그 여성이 개인적인 병리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⁶⁾.

그러나 병리학적 원인론은 “생물학적 환원론”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적인 행동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설명은 여성이 사회 내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과 그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⁷⁾. 여성과 남성이 가지고 있는 ‘성’의 의미, 그들이 받는 교육의 차이, 가족관계의 차이, 노동시장에서의 대우 등 여성과 남성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성매매 종사자-주로 여성들의 생리학적 특성을 성매매의 원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왜 여성들은 성을 판매하는지, 왜 남성들이 구매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한다. 여성이 성을 판매하고 남성이 구매한다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 의심없이 수용함으로써 본질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질주의(Essentialism)를 “사회적 현상을 그 현상이 존재 하는 특정한 상황 내에서 고려하지 않고 미리 예상된 근거에 따라 분석하는 것”⁸⁾이라고 정의한다면, 병리학적 원인론은 성매매가 존재하는 특정한 상황 즉, 여성이 판매하고 남성이 구매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그 설명에 큰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6) Phonenix, J. (1999), Making sense of prostitution, London: Macmillan Press

7) Smart, C. (1977) Women, Crime and Criminology, London: RKP.

8) Carrington, K. (1993), Offending Girls: Sex youth and justice, Sydney: Allen and Unwin, p. xiv

2) 사회적 원인론

사회적 원인론은 성매매의 원인을 연구하는데 있어 사회의 구조와 그 문화에 집중한다. 즉,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매매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Wilkinson⁹⁾은 주류사회에서 제외된 여성들이 “사회적 존재감”을 상실함으로써 성매매의 길에 들어선다고 한다. 여성들은 불우한 가정환경, 제도권 교육으로부터의 소외, 빈곤한 경제생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주류사회로부터 제외된다. 일단 사회로부터 제외된 여성들은 “사회적 소속감”과 “사회적 안정감”이라는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혜택을 잃는다. 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며,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성매매의 하위문화에 익숙해지고 성매매 하위문화의 소속감은 그들의 ‘사회적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는 과정인 것이다.

사회적 원인론 역시 병리학적 원인론과 마찬가지로 성매매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개인적 자유의지에 의한 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개인적 분석수준에 그친 병리학 적 설명과 달리 사회적 원인론에서는 좀 더 거시적 분석을 시도하기도 한다. 즉, 성매매가 사회의 유지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며, 이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 및 집단이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사회 유지의 메카니즘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 스스로 그 존속성의 유지를 위해 결혼제도, 가족제도, 사유제도 등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이 성매매도 그 제도의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한다. Durkenheim은 범죄 기능성설을 주장하였는데 범죄가 형사 사법 절차를 통해 어떠한 행태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며, 이러한 효과는

9) Wilkinson, R. (1955), *Women of the street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common prostitute*, London: British Social and Biology Council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¹⁰⁾. Davis (1937)¹¹⁾은 Durkheim의 범죄기능성설을 성매매에 적용하여 성매매가 현재와 같은 핵가족 시대에 필요한 것이며, 남성들의 참을 수 없는 성충동을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결함으로써 가족이 보호되고 강간 등 성범죄율을 낮추어 성매매 종사 여성이 아닌 여성들의 정숙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성매매 기능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원인론 역시 사회적 소외가 개인에게 특정한 병리적 성질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병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다고 설명함으로써 병리학적 원인론과 같이 ‘생물학적 환원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성매매 기능설은 여성과 남성의 성욕구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사회적 맥락 내에서 겪는 경험을 다르게 해석하여 이를 성매매의 원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성매매가 다른 문화, 다른 하위문화 내의 각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경제적 원인론

앞의 두 원인론이 성매매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외부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경제적 원인론은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성매매를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경제적 원인론에서도 개인의 선택이 완벽히 자유로운 상태를 뜻하지는 않는다. 여성이 노동환경에 처해진 한계와 차별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 내에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없어

10) Durkheim, E. (1965), *The rules of the sociological method*, New York: The Free Press.

11) Davis, K. (1937), ‘The Sociology of Prostit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 pp. 746-55.

성매매를 선택하거나¹²⁾ 성매매가 여성에게 가능한 다른 직업군 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선택한다¹³⁾. Lemert (1951)은 성매매는 상대적으로 금전적 소득에 대한 접근권이 약한 여성들이 남성들과의 소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중의 하나라고 설명한다¹⁴⁾.

Mcleod (1982) 의 경험적 연구에서 성매매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었다면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통적 노동시장이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적 역할에 그쳐 있었다. 또한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남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중 몇몇의 여성들이 소득을 얻기 위한 대체방안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 것이다¹⁵⁾. 특히 직업으로서의 성매매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성들에게 큰 매력이 될 수 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자신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희망에 따라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종사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며,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의 저항으로도 해석된다¹⁶⁾.

성매매는 경제적 활동으로서 선택된 것이며, 성매매 종사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비정상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적 권력관계 내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 한계 내에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여성 노동자일 뿐이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 자체는 다른 여성노동자 및 다

12) Finnegan, F. (1979), *Poverty and Prostitution: A study of Victorian prostitution in Y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 Roberts, N. (1992), *Whores in History*, London: Polity

14) Lemert, E. (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Hill

15) Mcleod, E. (1982), *Women working: Prostitution Now*, London: Croom Helm

16) Phonenix, J. (1999), *Making sense of prostitution*, London: Macmillan Press

른 여성들이 겪고 있는 생활과 다르지 않다. 성과 물질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성매매는 결혼제도 내에서의 여성과 다르지 않으며, 자본주의내의 경제적 소득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다른 노동과도 구별되지 않는다¹⁷⁾. 이러한 경제적 접근법은 성매매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사회적 일탈행위로 보지 않는 첫 번째 설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접근법은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얻는다는 행위가 각 사회 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성매매 종사자의 생활이 사회 내 문화적 맥락 내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간과한다¹⁸⁾.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성매매를 직업으로 결정한다는 위의 설명은, 같은 성매매 종사자들 간의 큰 계급의 격차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¹⁹⁾. 성매매를 다른 경제활동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는 네덜란드의 입법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네덜란드는 성판매 행위를 다른 직업과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성 판매자는 노동법등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가지며, 다른 임금노동자와 같이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17) Phonenix, J. (1999), Making sense of prostitution, London: Macmillan Press

18) Jenness, V. (1990), 'From Sex as Sin to Sex as Work: COYOTE and the Reorganisation of Prostitution as a Social Problem,' Social Problems, vol. 37, no. 3, pp. 403

19) Raphael 과 Shapiro (2004)의 연구에 따르면 고급콜걸, 에스코트 서비스, 성매매업소, 길거리 성매매, 누드클럽 등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형태가 있으며 이러한 노동형태에 따라 그들이 겪는 억압, 착취, 위협에의 노출정도가 다양하게 드러난다. (Raphael, J and Shapiro, D. (2004) "Violence in Indoor and outdoor Prostitution venues", Violence Against Women, Vol. 10 No. 2, pp.126-139), 또한 노동형태 뿐 아니라 성매매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즉, 불법체류 성매매종사자, 인신매매된 성매매종사자, 외국인 성매매종사자등 국적에 따라 그들의 소득, 생활방식, 착취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Farley, M. (2004), "Bad for the Body, Bad for the Heart :Prostitution Harms Women Even if Legalized or Decriminalized", Violence Against Women, Vol. 10 No. 10, pp 1087-1125)

2. 여성주의적 입장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의 담론은 성매매를 분석함에 있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성’의 개념에 관심을 갖는다. 즉, ‘왜 남성은 구매하고 여성은 판매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매매의 원인과 함께 성매매 현상에 초점을 둔다. 여성주의적 담론은 성매매 종사자로서의 여성은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며, 이들이 성매매 종사자로서 겪는 일상생활은 어떤 것인지, 성매매 종사자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한 사회적 소외, 폭력, 억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여성주의적 입장은 자유주의적 입장, 급진주의적 입장, 포스트 모더니즘적 입장으로 나뉘어 설명된다. 자유주의적 입장은 성매매를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로 인정하고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급진주의적 입장에서 성매매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낸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이며 성매매는 금지되고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다. 다만, 성매매 종사자들은 사회제도의 피해자인 만큼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성 구매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여성주의에서는 성매매를 급진적인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본다. 국가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와 그 입장을 같이 하지만, 자유주의가 성매매를 다른 직업과 같은 위치에 놓고 국가는 성매매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치는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적 페미니즘은 성매매가 해방적 여성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며 그들의 성 판매 행위는 남성지배적 사회에 대한 전복적인 저항이라고 주장한다.

1)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입장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성매매는 보호받아야 할 여성의 권리이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J. S. Mill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

복'이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면서²⁰⁾ 개인의 자유는 그 개인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국가 및 사회로부터 침해 불가한 절대적인 자유이다. 1963년 ACLU (American Civil Liberty Union)는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 갖고 있는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매매를 '희생자 없는 범죄'이며 성인이 합의한 성매매는 헌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선언한다²¹⁾.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남성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억압적인 성역할을 비판한다. 남성만을 사회적 주체로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성적, 사회적 자유를 허락하는 반면, 여성을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교육시킨다는 것이다. 성 판매를 금지하는 법은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률과 같이 여성의 몸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결정권을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남성과 여성의 자유와 형평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²²⁾. 성 판매는 하나의 직업일 뿐이며 성 판매자는 경제적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를 포함한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의 탈 범죄화를 주장한다.

실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옥내에서 성인간의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하여 사생활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탈범죄화 한 것은 위 자유주의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공정한 가격에서의 깨끗한 거래'²³⁾라는 성매매는 현재 존재

20) Kvale, S. (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London: Sage

21) Mackinnon, C. A. (1996), 'Prostitution and Civil rights, in D. K. Weisberg (ed.), *Applications of feminist legal theory to women's lives: sex, violence, work, and reproduction*,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에서 재인용

22) Freeman, J. (1990) 'The feminist debate over prostitution reform: Prostitutes' rights group, Radical feminists and the (Im)possibility of Consent,' *Berkeley Women's Law Journal*, vol. 5, pp. 75-109

23) Jagger, A. M. (1997), 'Contemporary western feminis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y*, vol. 3, no. 2, available at http://acws.ewhawoman.or.kr/acws/03_ajws/ajws_main.php?part=view&admin=&menu=3&sub_menu=5&book_id=

하는 경제, 문화, 인종, 성별에 근거하는 다양한 계급의 특성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제3세계 시민이 서구유럽의 시민보다 더 적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은 거래의 불균형을 낳게 한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시각은 다양한 계급내의 불평등한 권력으로부터 기인하는 ‘불공정한’ 거래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비롯된 폭력, 포주 및 고객으로부터의 폭력과 착취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남성과 여성이 누리는 사회적 권력의 기반이 다르고 더구나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더욱 낮은 사회적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의 성매매, 제3세계 여성들의 서구 유럽으로의 인신매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 여성은 자국의 성매매 조사자들에 비해 훨씬 가혹한 경제적 사회적 착취를 받고 있는 사실²⁴⁾에 대해서도 그 설명이 부족하다. 성매매 종사자들 간에도 다양한 권력이 존재하며 그 다양한 권력기반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2)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입장

급진주의적 여성주의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남성지배적인 사회의 억압과 비인간화된 여성의 ‘사회적 성’의 결과물로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성매매 종사를 선택할 때 여성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적 요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피해자인 것이다²⁵⁾. 설사 성매매의 선택이 신체적 강요를 통하지 않더

891&seldivision=&key=sch&sch=writer&keywd=jagger

24) Sullivan, B. (1995), ‘Rethinking Prostitution’ in B. Caine and R. Pringle, (eds.), *Transitions*. New Australian Feminisms, Sydney: Allen and Unwin, pp. 184-97

25)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라도 성별화된 문화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선택하도록 정신적 또는 문화적으로 강요한다. 남성위주 사회를 유지시키는 가부장적 규범들은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내고, 여성적인 성별사회화는 여성이 남성을 위해 존재할 뿐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해주도록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²⁶⁾.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자본주의 내에서 교환가능한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즉, 급진주의적 여성주의내에서 성매매는 남성위주의 가부장 사회가 여성을 노예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성별화된 전략으로 이해된다.

급진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와 관련되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에 관심을 갖는다²⁷⁾.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받는 신체적 억압과 폭력은 단순한 직업적 위험 (Occupational hazard)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위험이 우연이라기보다 고의적이며 여성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성별적이라고 주장한다.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사회의 다른 여성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 역시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을 노예화 하고 종속화 시키기 위한 전략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남성위주 사회내에서의 여성은 성차별로 인해 구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빈곤에 시달리며, 남성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남성들에 의해 억압받고 폭력에 시달린다.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에게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억압, 폭력, 통제의 전형적인 형태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남성지배사회에 의해 강요받는 피해자이므

26) Hoigard, C. and Finstad, L. (1992), *Backstreets: Prostitution, Money and Love*, Cambridge: Polity.

27) Church, S., Henderson, M., Barnard, M. and Hart, G. (2001), ‘Violence by clients towards female prostitutes in different working setting: Questionnaire survey,’ *British Medical Journal*, vol. 332, pp. 524-25.

로 이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며, 다만 성매매 종사자의 희생을 막기 위해 성매매 종사자가 비도덕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착취 형태, 성매매를 촉진하고 장려하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을 처벌하는 법은 강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매매를 둘러싼 경제적 착취 및 신체적 폭력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이태리에서는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가족 및 파트너 등도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의 경우 급진적 여성주의의 입장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99년 스웨덴은 성구매자 처벌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성판매자를 피해자로 인지하고 성구매자만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성매매 종사자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급진주의적 여성주의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 포스트 모더니즘적 여성주의 입장

1980년대 들어 여성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적 여성주의의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논의함에 있어 성매매 종사자의 피해와 착취 보다는 그들의 성적 진취성과 정치적 저항성의 담론을 발전시킨다. 성매매종사자 권리를 위한 국제 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s' Rights) 에서 ‘성 판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일환이며, 성관계를 갖거나 갖지 않을 권리, 낙태 등 출산 통제를 할 권리, 성별, 인종, 계급을 떠나 성적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과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²⁸⁾. 즉, 성매매는 다른 직업에 비교하여 비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여성들에게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업주부와 비교하여 볼 때 성과 경제적 보상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등가의 가치를 지닌 사회

28) Bell, S. (1994), Reading, Writing, and Rewriting the Prostitute Bo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p 110.

적 행동이며 더구나 성매매 종사자들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의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한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사회의 피해자라기보다는 성매매가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즉 일종의 비판단적 맥락에서 성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직업인이며, 이들의 공적인 장소에서의 퍼포먼스, 즉 호객행위란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예술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고, 성매매 여성은 평등의 개념을 더 넓은 곳으로 확대시키려는 정치적 저항을 가진 집단이다²⁹⁾.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주장 단체인 COYOTE (Call Off Your Old Tired Ethics) 의 Margot St. James 는 “성매매 여성들만이 유일하게 해방된 여성”이라고 주장한다³⁰⁾.

포스트 모더니즘적 여성주의자의 논리에 따르면 성매매를 억압하고 단속하는 국가의 모든 법은 주체적인 성매매 여성들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기제이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은 성매매로 인해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여성을 방해하며, 성매매 업소를 금지하는 법률은 성매매 여성으로서 자유롭게 고용될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같은 직종의 동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다. 포주업무를 금지하는 법률도 역시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들에게서 가정적 유대를 빼앗는 법률이다. 이들은 성매매가 공적인 침해이며 사회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비난에 대해 모든 이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성매매 종사자도 호객행위의 자유, 광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는 성매매를 불법화 하고 국가가 포주로부터의 보호를 막고 있기 때문이며, 성차별로 인한 사회적 낙인화 때문이다³¹⁾.

29) *ibid.* pp.137-142

30) Jagger, A. M. (1997), ‘Contemporary western feminis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y*, vol. 3, no. 2에서 재인용

31) Bell, L. (ed.) (1987), *Good Girls / Bad Girls: Sex Trade Workers and Feminists Face to Face*, Ontario: The Women's Press.

즉, 성매매는 다른 직업과 같이 보호 받고 존경받아야 하며, 성매매와 관련한 어떠한 국가의 규제도 반대하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여성주의는 급진주의에서 모든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가정함으로써, ‘피해자화’시키고 ‘주변화’시킨다고 비판한다. 스스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무력한 피해자’임을 각인시키는 과정은 엘리트 여성주의의 과도한 온정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³²⁾.

1999년 스페인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다른 직업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여성주의자들의 입법 활동이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다만 성년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 포주 업무를 합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이 있었다. 또한 프랑스에서 이전에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호객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나, 1993년 소극적 호객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법 개정 모두 성매매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측면이었다는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여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보호적 입장

성매매와 관련한 담론 중 마지막은 사회보호적 입장이다. 사회보호적 입장은 19세기 유럽에서 성병이 창궐하면서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성매매 여성의 몸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20세기 들어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영향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침해라는 비판을 받게 되어 사그러지는 듯 하였으나, 이후 AIDS가 사회문제가되면서 성매매와 관련한 중요한 사회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유럽사회의 계급이 공고화 되어 중산층과 빈곤층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소위 국제화 시대로

32) ibid p. 29

접어들면서 유럽의 대도시들이 국제도시(Metropolitan)의 명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성매매로 인한 중산층의 거주환경의 침해, 기타 다른 범죄의 양산 가능성과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에 해를 준다는 우려를 낳으면서 새로운 질서유지적 담론들이 형성되었다³³⁾. 이는 성매매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지,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사회적 병리현상인지에 대한 물음 보다는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줄 수 있는 영향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

1) 공중보건 보호적 입장

유럽에서 성매매가 사회에 주는 영향이 담론화된 것은 19세기 초반 갑작스런 성병과 흑사병이 확산된 때였다. 19세기 초반 군인들을 중심으로 성병이 확산되면서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국가는 성매매 종사자로 의심되는 여성들에게 성병 검사를 의무화 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 투옥될 수 있었다³⁴⁾. 성병 검사의 대상은 성매매 종사자였고, 성 구매자들은 공중 보건의 피해자로 인식되었다. 이후 성매매 종사자들은 에이즈가 사회적 문제가 된 1980년대 또다시 공중

33) 이는 1994년 뉴욕시의 경찰개혁의 이론적 기반이 된 “깨어진 유리창 이론 (Broekn window Theory)”의 큰 유행과도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게 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학적 이론으로 조지 켈링 (George Kelling)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다. 뉴욕시는 큰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구걸행위, 무임승차, 노상방뇨 등 경범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실제 범죄율이 감소를 보여주면서 범죄학 및 경찰행정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다 (Matthews, R. (1992). “Replacing ‘broken windows’: crime, incivilities and urban change”. In R. Matthews, & J. Young (Eds.), *Issues in realist criminology*. London: Sage, pp. 19-50)

34) 1864년 영국에서 제정된 “Contagious Diseases Act”는 성병에 대한 대중의 높은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이법은 군인 해군에게 퍼지고 있는 성병의 예방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보건 당국은 성판매자라고 믿어지는 경우 그녀의 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성 판매자에게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치안판사는 병원에 감금하여 강제 의료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성병에 감염된 경우 3개월까지 병원에 격리 치료할 수 있다. 의료 검진이나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2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건의 해악으로 지목되었고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이 의무화 되는 입법이 생기기도 하였으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성매매로 인한 성병을 예방한다는 목적이나,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영향의 원인을 성매매 종사자들에게만 전가시키며, 건강검진을 위한 등록, 검진, 성병유무의 확인 등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성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질서유지적 입장

최근 사회보호적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중 보건의 입장이라기보다 ‘질서유지’적 측면이 강하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성매매 업소 및 성매매 밀집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특히 동유럽,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지의 이민자 성매매 종사자가 많아지자 예전의 성매매가 주로 지역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시기들에 비해 그 가시성은 훨씬 높아 졌다³⁵⁾.

길거리 성매매 종사자로 인해 여성 지역 주민들은 성구매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희롱이나 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학부모들은 통학하는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으며, 청소년들은 성매매가 이루

35) 성매매에 대한 가시성은 시민들에게 “범죄에의 공포”를 낳게 한다. 실제 유럽사회에서 범죄율은 크게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미디어에 의해 살인, 강도 등 감각적이고 충격적인 범죄 소식들이 재생산 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증폭된 불안감은 성매매, 청소년의 마약섭취행위, 길거리 낙서, 취중 난동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들에게도 예민하게 반응 하게 한다. 중산층의 범죄에 대한 공포감은 위와 같이 경미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동들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 하게 하며 이는 사회적 중산층과 하류층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Walklate, S. (2000). “Trust and the problem of community in the inner city”. In T. Hope, & R. Sparks (Eds.), *Crime, risk and insecurity*, London: Routledge, pp. 50-64

어지는 길거리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즉, 성매매는 지역의 안전, 부동산 가치, 자녀 교육 문제와 결부된 사회문제로 인지되기 시작되면서 성매매는 지역공동체에게 공적인 불법방해 (public nuisance)로 떠올랐다. 지역공동체 주민들은 성매매로 인해 범죄와 마약과 같은 위험하고도 위협적인 사회현상 우려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역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³⁶⁾. 즉, 성매매 종사자는 성매매 자체로서가 아닌 그 부수적 효과 때문에 도덕적 해악으로 여겨졌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주장하는 성매매 종사자가 아닌 지역 거주민들이 되었고, 성매매는 그 자체로 비범죄화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눈에 띄지 않을 경우에만 비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질서유지적 입장의 성매매에 대한 담론은 사회 중산층의 입장만이 반영되어, 성매매 종사자들을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직업환경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2000년 길거리 성매매 및 호객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 런던과 파리의 예를 분석한 Hubbard는 길거리 성매매의 단속은 도심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재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 종사자들을 지리적으로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⁷⁾.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서유지적 입장은 성매매 종사자들을 더럽거나, 비정상적이거나 다르다는 낙인을 강화시켜 사회적으로, 공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중심 사회로부터 배척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³⁸⁾.

36) Kantola, J. and Squires, J. (2002), "Discourse Surrounding Prostitution Policies in UK", presented in the PSA Annual conference, Aberdeen, 5-7 April 2002

37) Hubbard, P. (2004) 'Cleansing the Metropolis: Sex work and the politics of Zero Tolerance,' *Urban studies*, vol. 41, no. 9, pp. 1687-702

38) Sibley, D. (1995), *Geographies of Exclusion: Society and Difference in the West*, London: Routledge

길거리 호객행위를 단속하는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가 이러한 질서유지적 담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영국에서 2001년 성 판매자를 탐색하는 구매자를 체포 가능한 범죄로 규정한 법 개정, 아일랜드의 성구매를 목적으로 배회하는 자에게 경찰은 즉시 떠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시 범죄를 구성한다는 법, 프랑스에서 옷, 자세, 표정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암시하는 소극적인 호객행위까지 처벌가능하게 한 2003년의 법 개정은 등 최근 유럽 각국이 질서유지적 담론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성매매 관련 담론에 따른 논리적 입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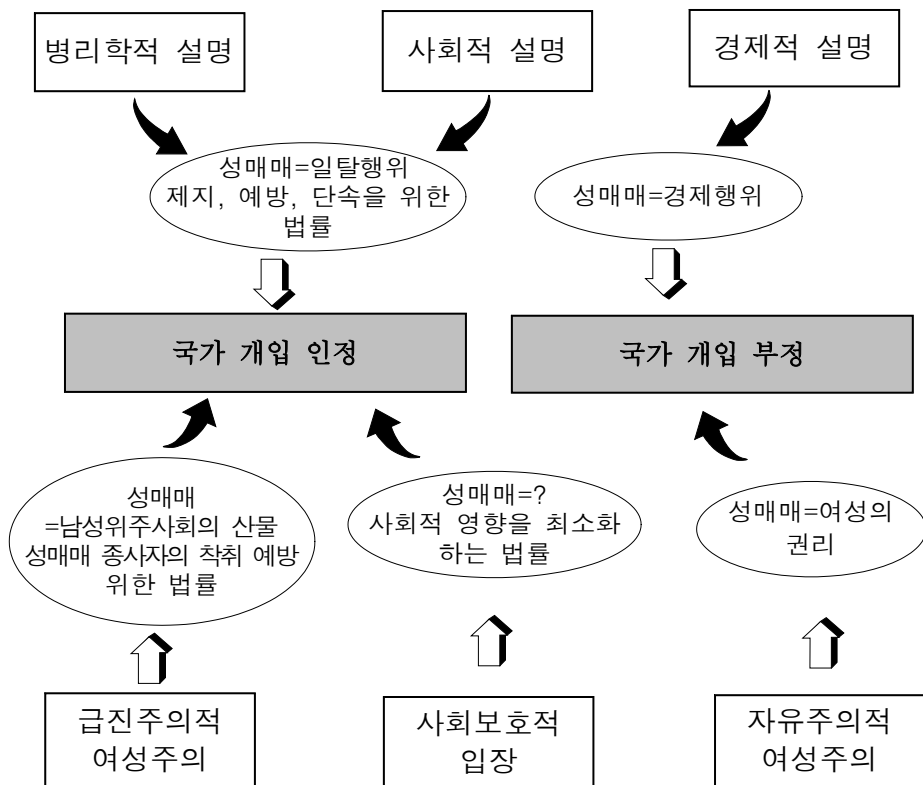
앞 절에서 설명한 성매매 관련 담론들은 각각 그 논리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정책의 해법을 제시한다. 우선 크게 성매매 관련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쪽과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눌 수 있다³⁹⁾.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쪽은 원인론적 입장에서의 병리학적 설명, 사회학적 설명, 여성주의적 입장에서의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그리고 질서유지적 입장이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 하는 쪽은 원인론적 입장에서의 경제적 설명, 여성주의 입장에서의 자유주의적 설명, 포스트모더니즘적 설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개입을 인정하는 측면에서도 그 논리는 각기 다르다. 병리학적 설명, 사회적 설명은 성매매를 범죄와 같은 사회 일탈행위로 보고 이를 예방, 제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진주의적 여성주의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성매매로부터 받는 착취, 폭력,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이다. 질서

39) 위 성매매 관련 담론들은 성매매의 범죄화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노동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의 국가 개입은 국가의 사법권과 형벌권의 개입만을 뜻하기로 한다.

유지적 측면에서는 성매매로 인한 지역 공동체의 불안, 범죄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반해 경제적,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모두 성매매를 노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로 보면서 국가 개입을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여성주의의 설명은 성매매 관련한 많은 행동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협에 빠뜨리거나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림 1. 성매매 관련 담론들과 그에 따른 국가적 개입의 근거】



제 2 절 성매매 관련 법제의 실제

각 국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그 역사와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체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절에서는 성매매 관련 법률을 크게 분류하기 위한 기준과 이에 따른 형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매매 관련 법률은 고전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개입가능성 여부와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금지주의 (Prohibitionism)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반면, 규제주의 (Regulationism)와 폐지주의 (Abolitionism)는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성매매의 여지를 남겨둔다⁴⁰. 금지주의와 규제주의는 성매매를 도덕적으로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사회의 해악을 주는 것이라고 전제하는 반면, 폐지주의는 성매매 자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⁴¹. 이러한 분류는 앞서 설명한 성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철학적 근거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국의 현실과 역사에 맞추어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철학적 근거와 순수하게 일치되지는 않는다.

1. 금지주의

금지주의 입법체계 내에서 모든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 판매자 및 성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고, 성매매관련 대부분의 행동들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판매자는 재교육되거나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자 및 일탈자로 받아들여진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금지주의

40) 국내에서는 금지주의, 처벌주의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규제주의는 합법적 규제주의, 폐지주의는 비범죄주의와 혼용하여 사용한다.

41) Danna, D. (2000), "Organizations active in the field of prostitution in a comparative Wester European Perspective", presented at Workshop in the ECPR Joint session 2000: Prostitution and international trafficking political issues

적 입법을 택하고 있다. 성매매가 자본주의적 거래방식의 일환이며 자본가로 인한 착취의 한 방식으로 본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금지주의에서는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회악으로 이해된다. 즉,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입법은 성매매의 원인에 대한 병리학적 설명 및 사회학적 설명의 철학적 바탕으로 기본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주의의 입법 목표가 성매매의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범죄화 함으로써 성매매를 성공적으로 근절시키고 있는 국가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금지주의는 성 구매자의 불법성으로 인해 그들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포주 및 착취자에게의 의존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⁴²⁾. 성 판매자는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고 언제나 체포와 기소의 대상이 된다.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성 판매자들은 고객, 포주, 성매매 업주로부터의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정신적 억압에 대해 호소할 수 없다. 사회 및 가족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성 판매자는 한쪽으로는 성매매 업소에게 한쪽으로는 국가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⁴³⁾.

2. 폐지주의

역사적으로 “폐지주의”(Abolitionism)는 19세기의 노예제 폐지운동에서 비롯된다. 19세기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같이, 현재의 폐지주의 운동은 성매매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폐지주의 법률 내에서 성매매 종사자는 ‘성적인 노예’, ‘백인 노예’로 이해되며,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노예인 것이다. 다만, 노예제 폐지에서는 노예가 특정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관계의 폐지를 의미하였

42)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43) Wijers, M. (2001) “Criminal, Victim, Social evil or working girl: legal approaches to prostitution and their impact on sex workers”, presented at Seminario Internacional sobre Prostitucion, Madrid 21-23 Junio 2001, Instituto de la Mujer, UNED

으나, ‘성적인 노예’의 경우 노예의 상태 및 지위보다는 그 행위 자체의 폐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 성매매는 특정한 상태에서가 아닌, 본래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이며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이다.

폐지주의에서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성매매를 통한 착취는 범죄로 규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지 않고, 일탈행위 및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성 판매자는 피해자로 인정된다. 폐지주의의 바탕이 되는 논리는 성매매는 여성을 성매매에 종속시키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고 있는 포주들 때문에 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법적 규제 보다는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제 3자에 대한 처벌이 성매매 근절과 성 판매자들의 보호에 가장 좋은 정책이 된다. 완전한 폐지주의 입장에서 금지되는 제3자의 행동은, 성 판매자의 구인, 성매매에 대한 조력, 성매매 업소의 운영, 성매매를 전제로 한 임대 계약, 성매매 중개 및 알선,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을 받는 행위 등이다. 즉, 성매매 종사자들은 혼자 일하고 그들의 수익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경우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성매매 종사자들의 일할 수 있는 권리, 신체적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사회적 소통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폐지주의 내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실제 일을 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들은 다른 노동자와 같이 사무실을 빌릴 수도, 고용될 수도, 다른 노동자와 협력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고객과의 접촉도 금지된다⁴⁴⁾. 폐지주의는 성매매 종사자의 직업적 공간을 제한할 뿐 아니라

44)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에서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길거리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논의 중이다.

그들의 사생활 역시 제한하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을 나누는 것 자체가 착취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들은 가족이나 파트너와 같이 살수 없다⁴⁵⁾. 성매매 종사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나, 실제 성매매 관련 많은 법률은 성매매 종사자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종사자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 페지주의는 오히려 그 실제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낙인화 하며,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⁴⁶⁾.

3. 규제주의

규제주의 내에서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사회적으로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페지주의에서와 같이 성매매를 사회에서 없어져야할 도덕적인 해악으로 생각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필요악’이라고 이해한다. 사회 내에서 성매매의 존재는 인정하나, 동시에 성매매를 사회 질서나 공중보건의 해악을 주는 존재이므로 규제주의는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그 입법 목표이다. 성매매는 질서유지, 공중 보건, 사회도덕, 남성적 요구, ‘정숙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 확보를 위해 국가의 다양한 규제와 제지를 받는다. 규제주의는 성매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뿐 성매매를 직업이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국가 역시 그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5) 이태리,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그 소득을 가족과 나누거나, 두명 이상의 성매매 종사자가 같이 살면서 그 소득을 나누는 행위 모두가 “포주”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46) Code, L. (1995), ‘How do we know? Questions of methods in feminist practice,’ in S. Burt and L. Code (eds.), *Changing methods: Feminist transforming practice*, Peterborough, Ontario: Broadview Press, pp. 33-44.

성매매를 규제하는 국가의 간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 대한 의무적인 등록,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건강검진, 특정 지역이나 장소 외에서의 성매매 금지, 특정 장소에서의 호객행위 및 성 판매자 탐색행위가 금지 된다. 규제주의 국가에서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허가제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국적 및 시민권에 따라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⁴⁷⁾.

규제주의 입법의 목적은 성매매 즉, ‘사회적 필요악’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신체, 거주지, 직업형태등을 제한하는 다양한 국가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체포되거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를 규제하는 법률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신체에 대한 정보를 국가 및 사회에 공개 해야만 하며, 특정 장소 및 시간에만 성매매업을 허용하는 국가 법률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거주지 및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 받는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직업을 등록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비난 및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적 낙인화 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주의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강제적인 등록제도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며,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자유 또한 제한하고 있다. 한번 성매매 종사자로 등록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며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종으로의 재취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적인 등록제도는 성매매를 ‘불법’과 ‘합법’⁴⁸⁾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어, 불법의 성매매에 종사하는

47)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이 성매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성매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48) Sullivan (2005)호주에서 성매매가 합법으로 인정되는 반면, 불법이민자의 성매매는 처벌하는 규제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이민자의 성매매는 종종 자국민의 성매매 종사자보다 훨씬 강도 높은 착취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종종 인

사람들의 법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시키고, 폭력과 억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도록 국가가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⁴⁹⁾.

제 3 절 유럽 10개국의 성매매 관련 법제의 분류

지금까지 설명한 성매매의 고전적 입법 분류는 1절에서 설명한 성매매 관련 담론에 따른 논리적 결과이다. 고전적 성매매 입법 분류의 방식은 국가의 성매매의 인정 여부와 도덕적 비난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성매매를 일탈행위로 보고 있는 병리학적 설명 및 사회적 설명은 성매매를 제지, 예방, 단속하는 폐지주의적 법률을 따르게 되며, 급진주의적 여성주의에서 성매매 종사자의 착취를 예방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폐지주의적 입장, 그리고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회보호적 입장은 규제주의적 입장의 성매매 입법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성매매 입법의 분류 방식으로 가장 고전적인 것으로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에 따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국가가 폐지주의⁵⁰⁾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고 분류되며,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이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분류 되고 있다⁵¹⁾.

신매매의 피해자 입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성매매라는 낙인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법적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Sullivan, M. (2005), "What happens When prostitution becomes work?",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49) Wijers, M. (2001) "Criminal, Victim, Social evil or working girl: legal approaches to prostitution and their impact on sex workers", presented at Seminario Internacional sobre Prostitucion, Madrid 21-23

50)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은 1949년에 UN에 의해 발의된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에 서명함으로써 폐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51) 장필화 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2001, 여성부

【 표 1. 성매매 법제의 이론적 분류 】

	도덕적 비난가능	도덕적 비난 없음
국가의 성매매 인정	<i>규제주의</i>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i>폐지주의</i>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국가의 성매매 부정	<i>금지주의</i>	

그러나 성매매 관련 입법은 그 시기별로 새로운 의제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하게 발전해 오고 있어, 고전적 분류 방식만으로는 각 국의 다양한 성매매 관련 입법을 아우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첫째,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주의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양성평등의 척도로서 성매매가 의제화되기 시작하자, 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입법이 생겨났으며, 성매매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 여부를 접어두고 그 질서유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법이 기존의 성매매 관련 법률에 추가되면서 고전적 분류 방식은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폐지주의 입법을 근간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스웨덴의 경우 급진주의적 여성주의의 개념을 전폭적으로 받아 들여 성 관매자를 철저히 피해자로 인식하고 성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하고,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경우 폐지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질서유지적 측면을 강조하여 길거리 성매매를 단속하는 규제주의적 특성을 띄기도 한다. 규제주의적 성매매 정책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성향을 받아 들여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작업환경 및 인권보호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네덜란드의 경우는 고전적인 입법체계로는 그 분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 역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들을 그 전형적인 틀에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모두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빈곤한 모든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성매매 여성들이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의해 성판매를 선택하거나, 또는 자신이 스스로 남성지배 사회의 무력한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다⁵²⁾. 성매매 종사자의 정체성은 ‘자유로운 개인’과 ‘피해자’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성매매의 종사는 성별화된 피해자화를 겪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성별화된 삶의 전략들을 통해 삶의 주체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³⁾. 각국의 입법 또한 이러한 성매매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성매매와 관련한 많은 개념들을 각국의 문화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 그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폐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해도 폐지주의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의 개념도 각국 마다 그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착취의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가질 때만이 착취라고 인정하는 반면, 영국 및 아일랜드에서는 제3자의 경제적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착취로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즉, 성매매 종사자의 정체성이 ‘급진적 여성주의’와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정규화된 틀의 그 어딘가에 존재 하는 것처럼, 성매매 관련 입법들도 다양한 관점들을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입법체계는 고전적 분류 방식에 의한 범주를 벗어나기도 하고 그 경계에 서기도 하면서 새로운 입법체계의 분류 방식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럽 10개국의 성매매 관련 법률을 분석하기 위해 지금까지 설명한 고전적 입법체계 분류를 바탕으로 각국의 입법

52) Phoenix, J. (2000), “Prostitute Identities: Men, Money and Violen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0, pp37-55

53) *ibid* p. 48

추세를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좀 더 세분화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류는 위에서 논의한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배경을 철저히 따르다기보다 실제 실행되고 있는 법률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는 좀더 실용적인 분류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새로이 시도하는 성매매 입법의 분류는 실제 유럽에서 근본으로 하고 있는 폐지주의와 규제주의의 구분을 한축⁵⁴⁾으로, 그리고 최근 유럽 국가에 영향을 강하게 주고 있는 여성주의 관점과 질서유지적 관점을 새로운 변수로 삼고자 한다. 즉, 고전적인 폐지주의 및 규제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시각과, 폐지주의를 바탕으로 여성주의적 시각이나 질서유지적 관점을 보완한 시각, 그리고 규제주의를 바탕으로 여성주의적 시각이나 질서유지적 관점을 보완한 시각으로 나누어 여섯 개의 부류로 나눈다.

고전적 분류에서의 폐지주의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도입한 입법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폐지주의의 관점에 급진적 여성주의의 관점을 도입하여, 성매매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동시에 성매매 근절을 입법 목표로 삼는다. 성매매 종사자를 철저히 남성 위주 사회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구매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고전적 폐지주의의 관점에서는 국가에 의해 성매매가 어느 정도 용인되면서 성매매로 인한 착취 및 억압만을 규제하는 반면 급진적 여성주의의 관점을 받아들인 폐지주의는 국가에 의한 성매매의 용인을 거부하고 성매매를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0년 성 구매자 처벌법을 통과시키면서 성매매 근절을 통한 양성 평등 실현을 공표한 스웨덴이 이러한 분류에 속한다.

폐지주의적 관점에 자유주의적 관점을 도입한 경우도 있다. 폐지주의적 관점이 성매매 종사자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따라

54) 위에서 살펴보았듯 유럽의 국가에서 금지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지주의를 분류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위해 성매매 종사자들의 고용, 구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고전적 폐지주의 관점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와 연루된 제3자에 의한 착취를 근절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따라서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착취가 가능한 모든 행동들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이 오히려 성매매 종사자들이 고용될 권리, 함께 일할 권리, 자유롭게 타인과 가족생활을 나눌 권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폐지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성매매 관련 행동들을 비범죄화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경제적 착취,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를 제외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는 것,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구직활동, 호객행위 등을 모두 비범죄화 하고 있는 스페인이 이에 속한다.

최근 EU 가입 국가의 확대 와 동유럽 국가에서의 많은 이민자들이 생겨나면서 성매매 관련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는 성매매의 가시성이다. 이와 함께 폐지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질서유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법이 생겨나고 있다. 폐지주의적 관점에서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며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의 근절이 가장 중요한 입법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매매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그 사회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성매매를 국가적으로 용인하되 그 가시성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질서유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폐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성매매의 사회적 악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길거리 성매매, 길거리에서의 호객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최근 성매매 종사자의 호객행위 단속, 길거리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가 폐지주의를 기본으로 질서유지적 관점을 보완하고 있는 나라들에 속한다.

규제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도 여성주의적 관점을 도입하기도 한다. 고전적 규제주의의 관점에서는 성매매를 인정하는 대신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만을 규제하기 위해 허가제, 등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성매매 종사자들의 노동권 및 작업환경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다른 노동과의 차별을 거부한다. 즉, 성매매 종사자들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규제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관점을 도입한 입법체계는 사회적 악영향을 염두에 두어 성매매를 규제하는 규제주의에 바탕을 두고, 동시에 성매매 여성의 권리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한다. 네덜란드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들을 모두 풀고, 성매매 종사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서 이러한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다⁵⁵⁾.

【표 2. 성매매 법제의 실제적 분류】

	여성주의적 관점		질서유지적 관점	고전적 의미 유지
	급진적	자유주의적		
폐지주의 기반	스웨덴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이태리, 핀란드
규제주의 기반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55) 네덜란드의 법체계에 대해 노동자 모델(Wijers, M. (2001) “Criminal, Victim, Social evil or working girl: legal approaches to prostitution and their impact on sex workers”, presented at Seminario Internacional sobre Prostitucion, Madrid 21-23)로 분류하거나, 신 규제주의 (장필화 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2001, 여성부,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로 분류하기도 한다.

제 3 장 폐지주의에 기반한 성매매 관련 법률

3장과 4장에서는 실제 유럽의 각국에서 성매매 관련 법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철학적 배경 및 그 논리들 그리고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쟁점들에 맞추어 성매매에 대해 각국이 입법한 법률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작용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성매매에 대한 법률은 형법,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등에 나누어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의 형식적 의미에 따라 설명하기보다 성매매에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를 실질적으로 살펴보고자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규제, 성매매 관련 제3자에 대한 규제,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규제는 성 판매자 및 성 구매자와 관련된 규제으로써 주로 형법의 처벌법규와 관련이 있다. 성매매 관련 제3자에 대한 규제는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대한 규제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각국의 입장에 따라 처벌과 허용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는 주로 질서유지 및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규제이다. 성 판매자의 호객행위 및 성 구매자의 성판매자 탐색행위에 대한 규제, 그리고 성 판매자의 광고행위 및 의료검진은 모두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직접 처벌이 가능한 규정들이나 성매매 자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장에서는 폐지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질서유지적 입장을 보완하여 성매매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이태리,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의 성매매 법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고전적 폐지주의

1. 핀란드

1980년대까지 핀란드는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은 성매매 종사자의 수와 상대적으로 적은 이민율과 범죄율 그리고 높은 사회 안정성을 이유로 성매매의 사회적 가시성이 낮았기 때문에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시 되어오지 않았다⁵⁶⁾.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핀란드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및 에스토니아 등지에서의 이민자 유입 그리고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성매매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성산업은 급속한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성매매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시작하였다. 핀란드는 성매매에 대해 규제주의적 태도와 금지주의적 태도를 함께 지니고 있었다. 1907년까지 국가는 성매매 허가제를 실시하였고 허가는 경찰이 담당하였다. 1907년부터 1943년 까지 성매매 규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성병 방지를 위한 의료적인 측면이었다⁵⁷⁾. 1936년에 제정된 부랑자법(Vagrant Act)는 이후 50년 동안 성매매를 금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률이었다. 이법은 성매매 종사자를 네 번째 카테고리의 부랑자로 분류하고 ‘직업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하는 자’로 간주하였다. 법적으로 성매매는 속악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행위이며, 성매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의 통제 하에 들어가고 재교육을 위한 기관이나 때때로 직업기술소로 강제 수감될 수 있었다. 1987년 핀란드는 폐지주의적 정책을 취하면서 성매매 종사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고 성매매를 통한 착취 행위만을 처벌하게 되었다⁵⁸⁾.

56) Varsa, H. (1986), Prostitution nakymaton osa: miesasiakkaat:: lehti-ilmoit-teluprostitution asiakkaista, Helsinki: Tasa-arboasiain neuvottelukunta (Naistutkimusmonisteita)

57) Hakkinen, A. (1995), Rahasta-vaan ei rakkaudesta. Prostituutio Helsingissa 1967-1939, Keuruu: Ptava

58) Jarvinen, M. (1990), prostitution I Helsingfors: en studie I kvinnokontroll, Abo: Abo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규제

핀란드는 1987년에 이르러 개개인에게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성매매에 대한 모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 합법화 한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독립적으로 개인 사업가로서 성매매업에 종사할 경우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성 판매자 및 성 구매자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성 판매자는 세금당국의 세금납부대상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다만, 성매매업에 종사할 권리는 핀란드 국민들에게만 허용된 것이며, 1990년대 소비에트 붕괴이후 러시아, 에스토니아등지에서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핀란드에 불법체류 하기 시작하면서, 1999년 외국인법 (Alien Act)은 성매매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로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 불법 체류자들은 더 이상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포주 및 인신매매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 성매매와 관련된 착취 대한 규제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정의는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 성 판매자 및 성 구매자가 될 수 있다. 1999년 성폭력법 (Sex Crime Act)은 성 구매자에 대한 제한적인 범죄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성 구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⁵⁹⁾. 그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이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

Akademis forlag

59) 핀란드에서는 16세 이하 소녀와의 성관계를 의제강간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16세 이상과 성관계는 형벌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16부터 18세 사이 청소년과의 성매매

취'로 인정되는 4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⁶⁰⁾. 성매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포주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유지하는 행위, 타인의 성매매로 인해 이득을 얻는 행위, 타인을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협박하거나 유인하는 것이 성매매에 대한 착취로 인정된다. 이는 벌금 또는 3년까지의 형벌에 처할 수 있다. 핀란드의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포주업무 규제에 중점을 두게 된다. 포주업무는 성매매 종사자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지 경제적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개별적이고 독립적 성매매 이외에 두 명 이상의 성매매 종사자들을 고용, 조직하는 행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에스코트 서비스를 매개해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형법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역시 금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형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짓지 않고, 폭력, 협박, 위계를 이용하여 타인을 강제된 노동에 종사시키는 자는 2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5세 이하의 아동을 폭력, 협박, 위계를 이용하여 인신매매의 목적으로 그를 통제하는 것,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노예의 상태로 두는 것,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행위, 피해자를 거래하는 행위⁶¹⁾는 모두 같은 형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의 강요 및 인신매매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적 감금, 이동, 타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72시간을 넘길 경우 가중 처벌된다. 외국인 법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는 추방의 대상이 되나, 인신매매의 피해자 일 경우 그 피해자가 인신매매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 협력이 인정될 경우 외국인 법에 의해 그 피해자에게 임시 거주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행위가 처벌된다.

60) 형법 chapter 20, section 6

61) 형법 Chapter 25, section 3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1990년대까지 포주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성매매 여성들이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제도적으로 잘 구비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성매매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이민자의 급증과 경제 불황을 이유로 신문, 잡지 인터넷 등으로 개별적으로 매개되어 이루어졌던 과거의 성매매와 달리 성매매 종사자들은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1999년 성폭력법 (Sex Crime Act) 제정 시 공공장소에서의 성매매로 많은 핀란드 여성들이 성 구매를 원하는 남성들에 의해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고 있으며, 성매매 종사자들로 인해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여론에 의해 공공장소에서의 성매매를 금지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국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법률에 의해 노상에서의 성매매를 금지 할 수 있게 되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성매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법안이 통과되어 성매매 종사자들은 처벌을 받는 반면, 구매자들은 처벌받지 않아 구매자 처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 이탈리아

1958년 Merlin law 입법 이후, 이탈리아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기존의 규제주의적 입장을 포기하고, 폐지주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와 같이 성매매와 관련한 착취 및 인신매매는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착취의 형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와 관련한 착취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는 핀란드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이탈리아가 경제적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제 3자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핀란드의 경우 ‘경제적 목

적’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어, 이태리에 비해 더 많은 성매매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두 국가 모두 인신매매 관련 특별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태리가 핀란드에 비해 더 많은 가중 처벌 조건을 두면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규제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착취의 형태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⁶²⁾. Merlin law 입법 이후, 모든 성년의 여성들이 ‘성매매 종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하였다. 이러한 성매매의 권리는 “타인의 착취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여성이 스스로 성매매 종사자가 되거나, 또는 여성이 자신의 성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상 누구나 인정받아야 할 권리라고 여겨진다.

2)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관한 규제

‘타인의 착취’의 개념에는 이익을 얻음과 관계없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성매매를 돕는 모든 행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는 행위, 성매매 종사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행위, 성매매 업소를 유지하는 행위는 모두 ‘착취’의 개념 안에 포함된다. 이는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고, 성매매 업소를 금지함으로써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수익을 보호하고, 제3자로부터의 착취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포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그들이 그들의 몸에 대한 성적결정권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철학적 바탕에서 시작한 입법이다.

62) 형법 531-534

형법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행동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것,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태리 형법에서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외로 여행하는 것 역시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착취로 인정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매매 목적의 여행을 알선하는 것 역시 2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태리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이 형법에 의해 인신매매를 처벌 하여 왔으나, 2003년 인신매매법 (Law on Measures against Human Trafficking) 를 입법하면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가중 하였다. 위법에 따라 타인을 노예화 하는 것을 8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⁶³⁾ 만일 그 피해자가 18세 이하거나 인신매매의 목적이 성매매를 위한 것일 경우 그 형벌은 1/3에서 1/2까지 가중될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폭력, 협박, 위계, 권위, 타인의 약한 지위를 이용한 인신매매를 8년에서 20년의 형벌에 처하며, 만일 이와 같은 범죄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그 형벌은 1/3에서 1/2까지 가중될 수 있다⁶⁴⁾. 위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Merlin Law 성매매 업소 및 성매매 밀집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성매매는 대부분 길거리 및 성매매 종사자의 아파트 내

63) 인신매매법 228

64) 형법 600

에서 이루어 졌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이르러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의 많은 여성들이 구소련에서의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이태리로 유입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90년대 초반, 나이지리아와 가나의 많은 여성들, 특히 청소년들이 이태리의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기 시작했고, 현재 길거리 성매매의 95%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⁶⁵). 대규모의 아프리카 여성들이 길거리 성매매를 시작하자 높은 가시성으로 인해 지역 사회의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지역사회는 이에 따라 길거리 성매매의 단속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길거리 성매매의 단속을 위해 성매매 업소의 허가가 그 해법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 길거리 성매매 및 호객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니나, 이를 규제하는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제 2 절 급진적 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폐지주의 - 스웨덴

폐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던 스웨덴은 1977년 성매매 자체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악영향을 주며, 성매매의 존재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급진적 여성주의 시각을 전적으로 받아 들여 성매매의 원천적인 금지를 위해 성매매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다. 이때 성 구매자 및 성 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성 판매자의 처벌이 성매매를 더욱 은폐시키고 성 판매자의 법적지위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되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998년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65) Esohe Aghatise (2002), "Trafficking for prostitution in Italy: concept paper, 2002", Expert Group Meeting on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18-22 November 2002 Glen Cove, New York, USA

Act) 이라고 통칭되는 광범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⁶⁶⁾. 이로서 여성에 대한 학대, 성폭력, 폭력, 성매매 등 광범위하게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었다. 여성의 겪고 있는 폭력과 억압에 대한 국가적 인식과 함께 성매매가 마약, 폭력, 포주에 의한 경제적 착취 등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현상임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동시에 성매매 여성들이 겪고 있는 폭력과 억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성매매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은 구매자 처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⁶⁷⁾.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규제 및 보호

스웨덴에서 성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유형들을 규제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한 부분에서 정의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기보다는 양성불평등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된다. 성매매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착취 및 억압의 또 다른 표현이며 성매매 종사자는 언제나 피해자로 인식된다. 즉,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 판매자들은 양성불평등의 피해자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여성의 불평

66) 1998년 성구매자 처벌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부인, 동거인,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폭력, 협박, 모욕, 성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범하였을 경우 이를 개개의 범죄행위로 처벌하지 않고 통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 존엄성에 대한 훼손’의 범죄로 이해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여 그 의미를 확장하였으며, 성범죄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도 처벌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여성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직장 내에서 성추행에 대한 의미 확장 및 처벌강화, 강제적 할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67) A Working group on the Legal Regulation of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 (2004), Purchasing Sexual Service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등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남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고자 함이 이 법의 입법취지이다. 위 법률에 대해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는 성 판매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서 이들이 폭력 및 착취에 대해 자유롭게 정부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성구매자를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의 수요를 줄여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는 새로운 인구를 억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구매자 처벌로 인하여 여성들에게 성매매 종사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어 성매매업에 새로이 입문하려는 여성의 숫자를 줄일 수 있으며, 성매매 종사를 강요받았을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미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성매매업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따라서 1999년 성구매자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로 성적 서비스를 사려고 하거나 사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나 성매매를 제공하려는 자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성 구매행위를 한 자는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성 구매 행위란 대가성, 성을 사는 행위, 일회성, 성적 행위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대가는 금전, 마약, 고가의 음식 및 선물 또는 그 외의 다른 형태로 성적 행위 이전에 합의되어야 하며 성매매는 지속적으로 안정된 관계가 아닌 일회적이고 단속적이어야 한다. 또한 성적행위란 삽입성교 이외에도 유사 성교행위 및 기타 성적인 행위가 포함된다⁶⁸⁾.

이에 반해 성 판매자들은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아니하며,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해석되었다. 여성폭력방지법 이전에도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보장법 (Social Service Act, 2001)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신체적, 정신

68) 형법 section 11-12

적, 의료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⁶⁹⁾, 특히 20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Care of Young Persons Act, 1990)에 의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책임을 규정짓고 있다⁷⁰⁾. 더불어, 여성폭력방지법은 보건 복지부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복지, 건강 관리의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였고,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새로운 예산을 부여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증진 업무를 국가기관이 법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2.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대한 규제

성구매자 처벌법 이외에 성매매를 통한 다양한 착취 및 폭력에 대한 규제는 형법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성매매를 통해 부적절하게 경제적 착취를 하거나 성매매를 장려하려는 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성매매를 통해 부당한 경제적 착취를 하는 자는 포주행위로 규정되어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수 있으며, 성매매를 알선 매개 하는 행위 역시 같은 형에 처해 질수 있다⁷¹⁾. 성매매를 매개로 한 착취를 양이나 질로 판단하여 심각하거나 중대한 포주업으로 판단될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⁷²⁾.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 구매를 한 자에게는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성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 구매가 범죄로 규정된 만큼, 성 구매가 될 것임을 알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의 경우 범죄에 조력한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되고 있으며, 2인 이상의 성매매 여성들이 조력하여 성매매에 종사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착취로 인정되어 기소의

69) 사회보장법 453조

70) 청소년 보호법 52조

71) 형법 393조

72) 형법 399조

대상이 될 수도 있다⁷³⁾.

스웨덴은 2000년 UN의 국제적인 조직범죄를 막기 위한 ‘Convention against Transaction organised crime’⁷⁴⁾와 1997년 EU의 Joint action⁷⁵⁾을 받아 들여 2002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성매매에 관련된 모든 자는 형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주거지를 제공하는 행위, 피해자를 사거나 파는 행위는 모두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타인을 불법적 행위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강요, 위계 기타 불법적 수단으로 타인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는 2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⁷⁶⁾. 인신매매의 직접적 행위 뿐 아니라 위 피해자가 도착한 곳에서 피해자를 고용하거나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 수단으로 행해졌거나, 위 착취의 목적으로 행해 졌다면 이 역시 인신매매와 같은 형벌로 규정되어 있다⁷⁷⁾. 위 인신매매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행해 졌다면 불법적 수단이나 착취의 목적 여

73) 형법 458조

74) UN에 의해 제시된 위 Parmler Convention은 여성과 어린이의 성매매 예방과 처벌을 위한 프로토콜이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인 정책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위 프로토콜에 의하면 “인신매매”란 협박이나 강제, 다른 형태의 강요, 납치, 위계, 속임수, 권위의 남용, 금전적 이득, 타인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권한을 이용해 받아낸 동의 등을 통해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에 대한 구인, 이동, 교통제공, 은신처 제공을 하는 것이다. 이때 착취는 성매매를 통한 착취, 다른 형태의 성적인 착취, 강제된 노동, 노예와 비슷한 생활, 장기매매를 모두 포함한다 (Article 3). 여기서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진다. 여기서 18세 이하의 어린이는 그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든 교통편 및 숙박을 제공한 자 역시 처벌될 수 있다.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불법체류의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75) 성매매 방지를 위한 EU 가입국들의 법적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1997년 EU 의회는 가입국들이 인신매매와 아동의 성착취를 방지하고 이의 예방을 촉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매매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목적국의 입국, 경유, 출국, 거주시키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76) 인신매매 특별법 6항 2,3,4조

77) 인신매매 특별법 4항 1조

부를 불문하고 2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⁷⁸⁾).

외국인 법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추방의 대상이다. 따라서 인신매매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외국인 법에 의하면 범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 성매매 종사자들은 추방의 위협으로 당국의 도움을 청할 수 없다. 스웨덴은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증인보호 및 임시거주 허가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인도적 이유로 인해 인신매매의 피해자의 경우 임시거주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스웨덴에서의 성매매는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문제가 아닌 양성불평등에서 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법은 존재 할 수 없다. 다만 형법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범죄를 규정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부리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해 공동체의 분노를 발생시킬 경우 반사회적 행동으로 규정되어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는 규정⁷⁹⁾로 인해, 길거리 성매매 및 호객행위가 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4. 구매자 처벌법으로 인한 효과

구매자 처벌법은 스웨덴의 높은 양성평등 인식⁸⁰⁾으로 인하여 성 구매자 처벌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폭력반대법이 통과될 당시 전 세계에

78) 인신매매 특별법 4항 3조

79) 형법 240조

80)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높은 양성평등 지수를 드러낸다. 정부공무원중 50%이상이 여성이며, 의회는 40%, 지방자치의회는 48%, 지방자치정부공무원은 41%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등 여성의 정치, 사회참여가 두드러지며, 여성의 고용율도 70%를 기록하고 있다.

서 주목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것에 비해 오히려 스웨덴 내부에서는 큰 논란이 없이 통과되었다. 당시 위 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여성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로 지칭되는 등 구매자 처벌은 성매매 여성의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⁸¹⁾. 실제 법 시행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스웨덴 국민의 80%가 구매자 처벌을 찬성하였으며,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99년 구매자 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종사자들이 성매매업을 떠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⁸²⁾.

그러나 외국인 불법체류 성매매 여성의 경우 위와 같은 법률이 오히려 포주 및 범죄단체로부터의 착취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성구매자를 범죄인화 함으로서 인신매매의 피해자 및 착취의 피해자가 되는 불법체류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구매자들의 증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송환됨으로서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들의 피해와 착취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집행 과정에서 성구매자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는 성매매 종사자들로 인해 성구매자에 대한 실질적인 기소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⁸³⁾ 성구매자 처벌이후 성매매는 더욱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구매자와의 접촉이 어

81) Yvonne Svanstrom (2004), "Criminalising the john - a Swedish gender model?"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press pp. 225-45

82) Johannes Eriksson (2005), "The Swedish Model-Arguments and Consequence", presented at "Prostitution in Europe" in Berlin

83) 1999년 성구매로 기소된 경우는 99건이며, 이중 37건이 유죄입증에 실패 하였다. 이중 51% (19건)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로 드러났다. 더구나, 위 법이 시행된 첫 해, 경찰은 성구매자를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위해 경찰은 성구매자와 성판매자가 돈을 교환하고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포착해야 했다. 이에 대해 많은 여성들은 그들의 행동이 녹화되었다고 하여 기소되거나 유죄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의 사생활이 경찰에 의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하였다. A Working group on the Legal Regulation of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 (2004), *Purchasing Sexual Service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려워진 만큼 성매매 종사자들이 포주 및 불법으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에 취업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포주에 의존하게 하며 이들의 경제적 정신적 착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성 구매자 처벌이후 체포의 위험을 피하려는 성구매자 때문에 성 판매 여성들이 더욱 위험한 직업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길거리 성매매의 경우 성 판매 여성들의 위험 노출정도는 더욱 심해지는데, 경찰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가격홍정의 시간이 더욱 짧아지고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가격홍정 시간동안 성구매자로부터의 잠재적인 폭력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여지가 없이 성매매에 합의하게 됨으로서 성 구매자로부터의 폭력의 피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도 한다⁸⁴⁾. 또한 구매자 처벌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길거리 성매매를 시도하는 구매자들은 주로 이미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어 더 이상의 범죄기록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길거리 성매매 여성들의 폭력에 대한 노출정도는 더욱 위험해 지고 있다⁸⁵⁾.

시행상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구매자 처벌법은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시각을 전폭적으로 반영하여 세계 최초로 성구매자 처벌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성매매와 관련한 이슈들이 성판매자 즉 여성에 대한 비난과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었다면, 성 구매자 처벌법은 성매매와 관련한 담론 중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최초로 구매자 즉 남성에게 시선을 돌렸으며, 성매매 종사자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폭력과 사회적 낙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4) Carrington, K. (1993), *Offending Girls: Sex youth and justice*, Sydney: Allen and Unwin.

85)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3), "Prostitution in Sweden 2003-Knowledge, Beliefs & Attitudes Of Key Informants", pp 9-11

제 3 절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영향을 받은 폐지주의 - 스페인

스페인의 성매매에 대한 법적 태도는 그 격심한 정치적 변동만큼이나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다. 1935년 스페인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정부가 들어선 당시 성매매는 물론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금지주의’ 접근법이 채택되었다. 이후 프랑코 독재 시대인 1941년에 성매매가 법적으로 묵인되는 반면 경찰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는 “규제주의” 접근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후, 1963년 성매매 자체를 비범죄화 하고 성매매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착취하는 경우만을 범죄로 규정하는 ‘폐지주의’ 관점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지주의 관점은 성매매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강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성매매 종사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이러한 “폐지주의”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1970년의 사회적 위험과 예방에 대한 법률 (Act of Social menace and rehabilitation, Ley de Peligrosidad y Rehabilitacion Social)에 의해 성매매 종사자는 사회에 위험을 주는 존재로 간주되어, 이들은 특별한 기관에 감금될 수 있었고, 특정 도시에서 추방되거나, 특정 지역에 살수 없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불완전한 폐지주의는 1995년 성매매는 물론 성매매 업소 운영, 성매매 종사자 고용, 포주업 등 성매매와 관련된 행동들이 모두 비범죄화 되면서 완전한 ‘폐지주의’ 접근법에 접근하였다⁸⁶⁾.

스페인은 성매매를 통한 경제적 착취와 강요된 성매매를 제외하고는 성매매를 통한 착취로 보지 않는다. 네덜란드와 같이 성매매 업

86) Valiente, C. (2002), “State feminism and central state debates on prostitution in post-authoritarian Spain”,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05-224

소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없애고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것,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착취로 보지 않는다. 네덜란드와 같이 성매매에 대한 허가 및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주의로 분리될 수 없고, 성매매의 존재 여부를 국가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금지주의로 분류되지 않는다. 성매매를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만 성매매 존재를 인정하고 제3자에 의한 착취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폐지주의에 기본하고 있다. 그러나 폐지주의에 기반을 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착취의 개념을 가장 좁게 해석하고 있으면서,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인정하는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폐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규제

1995년 형법개정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를 사회에 위협을 주는 존재로 간주하여왔던 사회적 위험과 예방에 대한 법률 (Social Menace and Rehabilitation Act, 1970)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범죄로 취급되어 왔던 성매매와 성매매 관련 행위들에 대한 규제가 없어져, 성매매와 관련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및 성매매에 대한 강요와 착취뿐이다. 스페인이 기존의 폐지주의 입장과 다른 것은 성매매를 국가가 인정하는 이유가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보아 이를 보호한다는 입장보다는, 성매매 종사의 권리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⁸⁷⁾. 성매매 종사자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87) Valiente, C. (2002), "State feminism and central state debates on prostitution in post-authoritarian Spain",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05-224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노동자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는다.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그 종사자들의 노동 권리를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2.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대한 규제

1995년의 형법 개정 시에도 성년의 성매매에 대한 경제적 목적으로 한 알선은 불법으로 남아 있었으나, 1999년 개정에 의해 성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성구매자 및 판매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 성매매 알선 중개는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스페인의 헌법에서는 강요된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⁸⁸⁾, 형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을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거나,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착취하거나, 그들의 지위를 남용할 수 없으며 이는 2년에서 4년까지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⁸⁹⁾.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등이 처벌될 수 있다. 1995년의 기본법(Organic Act)에 따르면 위와 같은 범죄가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 졌다면 6년에서 12년까지의 징역으로 그 형벌이 가중된다⁹⁰⁾.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유인, 설득하거나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1년에서 4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⁹¹⁾.

형법에 의하면 불법적 인신매매에 대해 4년에서 8년까지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⁹²⁾ 스페인 및 스페인 연합국 거주 외국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기본법(Organic Act on the Rights and Freedoms of Foreign citizens in Spain and the social Integration)에 의하면 스페인에

88) 헌법 25조 2항

89) 형법 311조

90) 형법 188조 2항

91) 형법 187조 1항

92) 형법 318조

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인신매매에 의하였거나,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착취당하고 있다면, 이들은 행정적 처분에서 면제된다. 즉,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경찰당국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면할 수 있고, 더불어 일시적인 노동허락을 받을 수 있다.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을 둘러싼 규제

성매매와 관련한 대부분의 규제를 풀고 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와 자유주의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네덜란드가 규제주의를 바탕으로 성매매 허용지역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반면, 폐지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스페인에서 성매매는 길거리, 클럽, 성매매 밀집지역, 주차장 및 공업지역에 까지 광범위 하게 펼쳐져 있다. 폐지주의 성매매 관련 법률에 자유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만큼, 성매매와 관련한 사회적 제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스페인에서의 이러한 성매매의 증가로 인해 대도시 등지에서 도시미관 및 중산층의 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Catalan지역은 자치 법률로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단속하기로 하고 성구매자 및 성판매자 모두에게 벌금(750 유로)을 부여하고 있다.

제 4 절 질서유지적 관점의 영향을 받은 폐지주의 입법

폐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는 성매매를 통한 착취의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 유지, 성매매 종사자 고용,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제공이 모두 성매매에 대한 착취로 인정된다. 다만,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 보조행위의 경우 영국은 이에 대해 처벌하지 않

는 반면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모두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용인 정도는 프랑스와 아일랜드가 영국에 비해 더욱 낮다고 보인다.

질서유지적 관점의 영향을 받은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는 공통적으로 길거리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 길거리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호객행위,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접촉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길거리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 판매자를 탐색하는 구매자의 경우에도 “체포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아일랜드는 구매자에게 경찰이 경고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만 체포가능하다. 프랑스는 호객행위의 성 판매자만을 처벌하며 성 구매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대부분의 법 규정이 비슷한데, 적극적인 호객행위는 물론 소극적인 호객행위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프랑스는 성매매에 대한 광고를 금지 하고 있으나, 영국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역시 각국 마다 그 용인정도가 조금씩 다르다.

1.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중심으로)

영국의 성매매 관련 입법은 1957년의 동성애와 성매매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Homosexual Offence and Prostitution)에 기본하고 있다⁹³⁾. 이 보고서는 성매매가 비도덕적이거나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과 도덕의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동시에 성

93)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 (1957), Report of the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동성애와 성매매를 비범죄화할 것을 촉구하는 위 보고서는 위 위원회의 의장이었던 Wolfender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애는 더 이상 범죄나 질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매매와 관련한 처벌 가능한 행위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성매매를 좀 더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 보고서에 따라 영국에서 개인적인 성매매는 비범죄화 되고 성매매와 연루된 많은 착취 행위들만이 범죄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성매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국의 성매매 종사자는 법적으로 애매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성매매의 이중적인 법적 지위는 비교적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던 성매매를 더욱 비밀스럽게 행해지도록 만들었으며 대도시 등지에서의 공공장소의 성매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통해 그 사회적 가시성을 낮추기도 하였다⁹⁴).

이후 성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규제는 1956년 성범죄법 (Sexual Offence Act)과 1959년 노상범죄법 (Street Offence Act)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노상범죄법은 최근 영국의 성매매 관련 입법의 가장 큰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성매매로 인한 공적 불법방해 (public nuisance)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⁹⁵). 성범죄법이 성매매업소 운영, 착취, 성매매 알선과 같이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상범죄법은 성매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노상범죄법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태도, 공공장소에서의 호객행위,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의 접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⁹⁶). 이 두 가지 법률은 성매매의 사회적 가시성을 낮추는 대신, 불법적인 성매매를 은폐시키고 성매매자체를 좀더 상업화 하는데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⁹⁷). 영국의 이러한 질서유지적 입장은 이후 성매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94) Matthews, R. (1986), 'Beyond Wolfenden? Prostitution, Politics and the Law' in R. Matthews and J. Young (eds.) *Confronting Crime*, London: SAGE Publication. pp. 188-189

95) Kantola, J and Squires, J. (2002), "Prostitution policies in Britain, 1982-2002",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62-82

96) Phonenix, J. (1999), *Making sense of prostitution*, London: Macmillan Press, pp. 19-20

97) Matthews, R. (1986), 'Beyond Wolfenden? Prostitution, Politics and the Law' in R. Matthews and J. Young (eds.) *Confronting Crime*, London: SAGE Publication. p. 189

성매매 관련 입법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규제

영국에서의 성매매는 공공질서에 해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매매가 공적인 영역으로 드러나 성매매 대상자들이 아닌 거주자들 및 일반 국민의 생활에 방해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1967년 대법원은 성행위 당사자 이외 다른 사람이 연루되어 있거나 보이지 않는 한 사생활 내에서의 어떠한 성행위도 범죄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판례에 근거하여 성매매 자체는 불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옥내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은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다. 즉, 옥내에서 타인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합법으로 간주된다. 두 명 이상의 성매매 여성들이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성범죄법 (1956)에 의해 성매매 업소로 인정되어 범죄로 간주된다⁹⁸⁾.

2)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대한 규제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종사자들은 처벌받지 아니하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고용자들을 통제 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전, 채무변제, 성적 서비스제공, 기타 어떠한 형태로의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알선하거나, 성매매 종사자들을 조직 및 통제를 통하는 경우 성매매를 통한 착취범죄로 인정되어 6개월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98) 성매매 여성 혼자 성매매에 종사하더라도, 안전 및 기타 생활을 위하여 종업원을 1명 고용할 수 있다. 최근 두 명이 성매매 여성과, 1명의 종업원, 1명의 접수원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법개정안이 영국의 내무성 (Home Office)에 의해 제기되었다 (BBC, 2006, 1, 17).

성매매 업소 운영도 모두 범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⁹⁹⁾. 그러나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통제 없이 금전적 이득만을 얻는 경우는 합법으로 인정되어 성매매 종사자들을 가족으로 둔 자가 성매매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득을 향유할 경우 이는 합법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 소유, 관리 및 조력하는 경우 6개월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여기서 성매매업소란 금전적 계약을 전제로 어떠한 형태의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의 성매매 종사자가 함께 일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소를 모두 지칭한다¹⁰⁰⁾.

16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성 구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6개월에서 14년 이하의 징역에 만일 13세 이하일 경우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또한 18세 이하의 성매매종사자를 고용 및 관리 하였다면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¹⁰¹⁾.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의 거주지를 영국 내외를 막론하고 이동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인신매매 역시 6개월에서 14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성매매에 대한 법규정은 옥내의 성매매 업소보다 주거지역과 같은 공적이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매매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 공적 장소에서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호객 하는 행위는 남성 및 여성을 불문하고 모두 불법인데¹⁰²⁾ 이때 공적장소라 함은 어떠한 형태의 길, 골

99) 성범죄법 (2003) 52, 53조

100) 성범죄법 (2003) 55조)

101) 성범죄법 (2003) 47조 내지 50조

102) 노상범죄법 (Street Offences Act 1959)

성매매 종사자들의 호객행위는 1982년 이전까지 벌금이외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으나, 1980년 교도소 인구의 증가, 대처정부의 정부후자정책 등 실리적인 이유로 1982년 형사절차법 (Criminal Justice Act)에 의해 징역형 대신 벌금으로만 규정되었

목, 광장, 지하철, 건물 앞 통로, 건물 앞 출입구, 외부에서 보여지는 창문 또는 발코니를 포함하며, 호객행위라 함은 언어, 표정, 시선, 제스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유혹적인 몸짓을 모두 포함한다. 경찰이 공공장소내의 호객행위로 성매매 종사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1년 내의 두 번의 경고가 필요하며 이는 벌금형에 처해 진다. 호객행위는 대상자가 16세 미만이라도 처벌 가능하다.

길거리에서의 호객행위는 노상범죄법 (Street Offence Act, 1959)와 반사회적 행동규제법(Anti Social Behaviour Act, 1998)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 있다. 이 때 반사회 행동이란,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며, 이 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지방의회는 반사회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노상범죄법에 의해 성매매 종사자들의 호객행위를 처벌하기보다 반사회적 행동 규제법에 의해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반사회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¹⁰³⁾을 받기가 노상범죄법에 의한 기소 보다 쉽고, 위 법원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범죄법 (Sexual Offence Act 1985)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판매자를 탐색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스웨덴의 구매자 처벌법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 볼 여지는 있으나, 스웨덴의 구매자 처벌법이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구매자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의 성 구매자 처벌은 성매매가 거주자 및 일반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불쾌감을 야

다. 그러나 위법 시행이후 호객행위로 단속건수는 더욱 늘어났고 (1979년 호객행위 기소는 3,167건이었으나, 징역형 삭제 이후 1983년에는 10,674건으로 증가), 벌금을 내지 못한 여성들이 금고 및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성매매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3) 반사회 행동을 통제하는 법원의 명령은 최소 2년까지 지속할 수 있으며, 최근의 명령에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 심지어 한번에 12개의 콘돔을 사지 못하게 하는 명령도 포함되었다.

기하고 있으므로 성매매로부터 일반국민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성 구매자 처벌 입법과 관련한 청원은 청소년을 둔 학부모와 이슬람문화권의 남성들이었으며 이들은 성 판매 여성, 성 구매 남성들로부터 순진한 청소년과 ‘일반적인’ 여성을 보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¹⁰⁴). 스웨덴의 성구매자 처벌법에서 성매매는 남성 위주 가부장적 사회의 폭력이며 성 구매자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속시키는 주원인이고, 성 판매자는 폭력의 피해자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영국의 성 구매자 처벌법에서 성매매, 성 판매자, 성 구매자는 모두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존재로 인정되고 있다.

위 법에서 규정하는 구매자의 탐색행위 (Kerb-Crawling)¹⁰⁵)는 주로 길거리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위한 접촉을 시도하면서 또는 성매매 여성들을 탐색하면서 차를 타고 천천히 주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법에 따르면 차량에 앉아서 길거리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유인하는 경우, 차량 밖으로 나와 길거리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 타인을 유인하는 행위가 지속적인 경우, 주민 또는 유인을 받는 자에게 불편함을 주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범죄로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1,000파운드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체포”역시 가능하다¹⁰⁶). 커브크로울링으로 수사 받은 자에 대한 정보는 왕립기소위원회(Crown Prosecution Service)로 보내져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는 그들의 집으로 보

104) Kantola, J and Squires, J. “Prostitution politics in Britain, 1982-2002”,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Press

105) Kerb-Crawling 이란 본래 차를 천천히 운행하는 것을 말하나 동 법에서는 차를 서행하면서 특히 길거리 성매매 종사자들이 많은 지역을 성매매를 위해 성매매 종사자를 탐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106) 1985년 성범죄법 (Sexual Offence Act)에 의해 커브크로울링은 불법으로 규정되었으나 경찰이 이를 적발하였을 때 귀가 시킨 후 치안법원에서 소환하여 벌금을 구형하는 형식이었으나,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에서 체포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여 경찰은 커브크로울러를 체포하여 경찰관서에 동행 후 심문할 수 있게 되었다.

내저 재범방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적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불법은 아니나, 다만 그 광고의 노출이 나 음란성 수위가 강하다거나, 또는 보는 이에게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경우 출판물법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에 의해 단속될 수 있다. 음란한 광고에 대한 기준은 1990년대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어 최근 특히 런던의 중심부 외곽지역에 배포되는 몇몇 지역 신문 이외에는 성적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잡지, 신문, 티비나 라디오 등에 성매매에 대한 광고를 실어주는 행위는 성매매로 인한 이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공중전화 박스 내외부에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부착하는 행위는 6개월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된다¹⁰⁷⁾.

2. 프랑스

성매매에 대한 프랑스의 법적 태도는 1960년부터 개인적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반면, 공적장소에서의 호객행위 및 포주업무를 포함한 성매매 조직을 처벌하여, 전반적으로 성매매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없애고,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떠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그 정책 목표를 두고 있었다. 1947년 성매매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보수를 대가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보수’란 금전 뿐 아니라 가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도 포함한다. 성매매의 법적인 개념이 기존에 성판매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던 1990년대 들어 성매매 뿐 아니라 포주업, 호객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1991년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란 공적인 장소에서 음란한 몸짓이나 태도, 행동이나 말로 손님을 유인하는 자도 포함되어 성매매의 법적인 개념이 성

107)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46: 2001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객행위 또한 포괄하게 되었다.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규제

성매매에 대한 법적인 원칙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보장에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몸을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 확장된다. 성적 관계를 갖는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준다는 개념이므로 당연히 성매매 자체의 권리는 보호된다. 따라서 성구매자 및 판매자 개인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성판매의 자유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성매매 행위의 일반적이고도 절대적인 단속은 불가능 하나, 특정 시간 및 특정 장소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개인적인 성매매가 합법으로 인정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과 같이 취급되며, 성매매 종사자의 수입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프랑스 형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에 대해 프랑스 내에서 뿐 아니라 프랑스 외에서의 행위까지 처벌하는 속인주의 원칙과 프랑스 내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를 처벌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약속하는 제의를 하거나, 이의 제의를 받아들이거나 성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습관적이거나 한사람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였다면 그 처벌은 5년 이하로 가중된다¹⁰⁸⁾. 또한 프랑스 형법은 그 구매자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서비스 이후 보수를 지불하지 않거나, 그 행해진 서비스의 중요성에 반해 현저히 약하게 지불되었을 경우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다.

108) 형법 2225조 12항

2)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대한 규제

프랑스 형법은 모든 형태의 포주 업무를 금지 하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를 성매매업을 도와주거나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하는 경우, 성매매 종사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을 받는 경우, 성매매를 위해 타인을 고용하는 경우, 타인을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¹⁰⁹⁾. 또한 위에서 열거한 포주 업무에 연루되어 있는 자 역시 같은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성매매 종사자와 그를 착취하는 자를 중개하는 행위, 포주의 회계처리를 담당하면서 그를 도와주는 행위역시 불법이다.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매개하거나 포주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이 없으면 자신의 생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행위¹¹⁰⁾ 역시 불법이다. 따라서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에 의존한 그들의 가족 역시 처벌대상이다. 또한 성매매를 방지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을 위하여,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 성매매 종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역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¹¹¹⁾.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포주 업무 역시 형법상 범죄로 인정된다. 성매매를 위한 업소를 운영하는 것이나, 공공에 개방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에 의해 사용되는 어떠한 형태의 건물 한명 또는 다수의 성매매 종사자들 받아주는 것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간주 된다¹¹²⁾.

109) 형법 220조 내지 224조

110) 1993년 전까지는 성매매 종사자와의 단순한 동거 역시 불법적인 포주 업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성매매 종사자의 ‘보통사람과 같은 개인 사생활’을 방해하며, 그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 형법 이후에도 성매매 종사자의 가족들이 성매매로부터 오는 소득이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111) 형법 225조 내지 226조

112) 형법 210조

위에서 열거한 포주 행위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나이, 질병, 결합, 정신적, 신체적 결합 임신 등 피해자가 특별히 착취에 취약하다고 인정될 경우 형벌은 10년 이하로 가중되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프랑스에 막 도착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그 가해자가 인신매매 방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경우 역시 위와 같이 형벌이 가중된다¹¹³⁾. 위와 같은 포주 업무가 15세 이하를 대상으로 행해졌을 경우 형벌은 15년 이하로 가중되며, 범죄단체가 위와 같은 포주 업무를 행하였을 경우 20년 이하, 위 포주 업무가 고문 등 야만적인 방법을 통해 행해졌을 경우 형벌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¹¹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금지되며 이는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 이거나 특별히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가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그 범죄가 폭력이나 협박, 계약에 의해 이루어 졌거나, 그 범죄가 인신매매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의해 고용된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거나, 그 범죄가 범죄단체에 의한 경우 그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강화된다¹¹⁵⁾.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증인 보호프로그램이나 임시거주증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형사절차법에 의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취해 질수 있다.

성매매를 통해 직접적 이득을 얻는 것 이외에도 성매매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 역시 불법적 ‘포주’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성매매에 대한 관용 역시 ‘포주’활동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 1973년 대법원은 음식점의 주인이 성매매 종사자를 그의 음식점 테라스에 앉도록 허락한 것을 포주행위라고 판시 하였으며, 경찰 단속 시 성매매 종사자의 성매매의 증거품이 될 수 있는 쓰레기를 자신의 가계에 버린 것(1971), 감옥에 있는 남편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부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 역시 포주활동으로 판시 하였다(1993).

113) 형법 225조 7항

114) 형법 225조 9항

115) 형법 225조 4항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1960년 형법상 성매매 종사자의 호객행위는 성매매 목적을 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었다. 애매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실제 법집행의 그 가능성이 적고, 또한 해석 역시 자의적 일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1993년 형법 개정으로 ‘적극적’인 호객행위만이 처벌대상으로 축소되었다.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성매매가 위와 같은 적극적인 호객행위로 공공의 눈에 띄어 불쾌감을 야기 하는 경우나, 특정 시간 및 특정 장소에 -과리의 경우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 200미터 이내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간주함으로써, 성매매를 사회 내에서 없어져야 할 도덕적인 악으로 여기는 규제주의적 성향도 띄고 있다.

성매매는 존재 할 수 있으나, 공공에 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성매매가 다양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2003년 공공보호법 (Interior Security Act)의 개정을 가지고 왔다. 당시 장관인 Sarkozy는 강력한 단속만이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영국의 반사회 행동 규제법 (1998)과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경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개정을 이루었다. 특히 위 법에서는 성매매 종사자의 소극적인 호객행위도 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이 첨부 되었는데, “옷, 자세 또는 행동 등 어떠한 방법을 통한 호객행위”를 2개월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호객행위로 체포된 외국인들은 그 즉시 임시 거주증을 압수당한다. 만일 체포된 성매매 종사자가 그들의 포주를 고소하고, 새로운 보호주택으로 옮기는 것에 동의한다면 위 성매매 종사자는 3개월 동안의 거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단속은 성매매 자체 또는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 및 착취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성매매가 공공의 질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불법방해로 인식되어 성매매의 사회적 가치

성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3. 아일랜드

성매매에 관한 법률은 1993년에 개정되었으며 성 판매자의 호객행위 및 성구매자의 성 구매를 위한 탐색행위를 좀 더 강력히 그리고 실효성 있게 처벌하고자 함이 목표였다. 위 법개정으로 인해 경찰은 공공장소에서의 호객행위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갖게 되었고, 또한 호객행위로 인한 처벌의 범위에 성매매 종사자 뿐 아니라, 성구매자 및 성매매와 관련 있는 제 3자도 포함시키면서, 아일랜드의 성매매는 특정지역에서의 비공식적인 묵인과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엄격한 단속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처벌

아일랜드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이해는 영국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성매매 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나, 성매매와 연루된 많은 활동들이 불법으로 여겨진다. 성 구매자 및 성 판매자 처벌이 가능한데, 이는 이들의 행위가 공적으로 드러나 공공에 해를 준다고 여겨질 때이다. 성매매와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아일랜드의 성매매에 대한 법 정책은 공공에 대한 보호와 비공식적인 묵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¹¹⁶⁾.

2) 성매매관련 착취에 대한 규제

개인적인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으나, 성매매 업소를 유지하거나, 관리하거나 도와주는 행위, 성매매 업소를 목적으로 또는 습관적 성매

116) Bindel, J and Kelly, L. (2003), "A critical examination of responses to prostitution in four country: Victoria, Australia, Ireland, the Netherlands and Sweden", London: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 집이나 사무실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모두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¹¹⁷⁾.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성매매 종사자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명이상의 성매매 종사자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지시함으로써 성매매를 조직하는 행위, 특정인에게 성매매 종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¹¹⁸⁾. 성매매 종사자의 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 역시 1,000파운드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심점을 발견한 경찰관으로부터 영장청구를 받은 법관은 영장발부일로부터 한 달간 어느 시간이라도 경찰관이 수색 및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하랴수 있으며, 이러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역시 1,000파운드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인신매매 역시 엄격히 처벌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불법이민법 (Illegal Immigrants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을 성매매 종사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여성을 성매매 종사를 목적으로 그의 일상적인 주거지에서 이동시키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¹¹⁹⁾에 의해 1년에서 12년까지의 징역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1998년에 제정된 아동 인신매매와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법률 (The Child Trafficking and Pornography Act, 1998) 는 성적착취를 위한 미성년자의 인신매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이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미성년자를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에 종사시키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청소년을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에 이용하는 행동이 금지되어 있다¹²⁰⁾. 아동법 (Children Act)에 따르면 4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117) 형법 11항

118) 형법 9항

119) 불법이민법 2항

120) 아동 인신매매와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법률 3조 3항

그 청소년을 성매매 업소에서 살게 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성매매 및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 역시 형사법에 의해 처벌된다¹²¹⁾. 동 조항에서는 성매매 업소, 성매매, 또는 성적 서비스에 대한 말이나, 용어, 태도, 분위기로 성적 서비스를 연상케 하는 광고를 나눠주거나 이를 출판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에는 벽보, 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카드 및 기타 문서형태를 포함하며,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전화, 팩시밀리, 사진, 영사기 등 다양한 수단을 모두 포함한다.

형법의 성범죄 (Criminal Law, 1993)를 규정하는 장에서는 호객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의 장소 및 길거리에서 타인을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500파운드의 벌금에서 4주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¹²²⁾. 호객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배회하는 성구매자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길거리나 공공의 장소를 배회하는 자에게 그 장소를 떠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250파운드에서 4주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¹²³⁾.

121) 형사법 23조

122) 형법 7조

123) 형법 8조

제 4 장 규제주의에 기반한 성매매 관련 법률

본 장에서는 규제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매매에 대한 법률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규제주의는 성매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매매에 대한 허가, 등록제를 그 기본적 이념으로 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고전적 규제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전적 규제주의가 성매매의 사회적 피해에 집중하는 반면,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는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는 성매매 허가지역을 선포하고 성매매 지역에서의 호객행위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등 폐지주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자의 행동들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없애는 대신 성매매 종사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수혜자로 인정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제 1 절 고전적 규제주의

1. 독 일

1927년 독일은 개인적인 성매매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대신 이에 대한 사회적 피해를 규제하는 규제주의적 입법을 채택하였다. 이후, 성매매 관련 규제들은 자유주의적 영향을 받아 개정되거나 삭제되었다. 1954년 성매매 종사자에게 정기적인 의료검진을 의무화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바바리아 지역에서는 경찰이 성매매 허가지역에서 성매매 종사자로 의심되는 자에게 의료검진확인을 위해 검문 검색할 수 있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법에 의해 의료검진증을 언제나 소지 해야만

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체포 가능한 범죄로 규정되었다.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분류 되었는데 1963년 대법원은 다른 합법적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로 인한 소득 역시 과세대상이라고 판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민법에 의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무효한 계약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적 서비스 제공후 금전적 보상 지불을 거절하는 성 판매자들에게 항의할 수 없었으며, 성매매 종사자의 착취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구제방안도 없었다. 이로 인해 독일의 규제주의적 저책은 국가가 성매매를 규제, 허가해 주면서 동시에 성매매 종사자를 착취 및 억압에 노출되도록 방치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¹²⁴⁾. 2001년 법개정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해지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시간에 성매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허가된 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성매매 업소 운영, 성매매 종사자 고용등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규제

2001년 법개정으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해제 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시간에 성매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함으로서, 네덜란드와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타 직업’과 같은 지위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 성매매를 “도덕적이지 못한 것(sittensidrig)”¹²⁵⁾으로 법적으로 해석

124) Flori, (1989), “Human Rights: Simple Human Respect: West Germany, in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hores”, G. Phenterson (Ed), Seattle: Seal Press

125) 2001년 법개정 이전, 성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계약은 “도덕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의 “sittenwidrig”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구매자가 성행위 이후 금전을 지불하지 않아도 성 판매자는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없으나, 성매매 종사자가 돈을 받은 이후 성행위에 응하지 않는다면 성구매자는 이에 대해 소송 등 법적인 항의를 할 수 있다.

해 오던 관행을 없애 성매매는 이제 독일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직업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노동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2001년 이전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이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의무화 되어 있었으나, 이 또한 폐지되어 성매매 종사자들은 자유롭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의료보험의 혜택 역시 받게 되었다¹²⁶⁾.

2)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대한 규제

개인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는 숙박, 거주 및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성매매로 얻은 소득은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세율로 계산되며, 실제 성매매 산업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져 그 실효성은 의문이 있으나 법 규정에 따르면 성매매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가산된다.

다만, 독일에서 네덜란드와 같이 모든 성매매업소 및 성적 서비스 제공업소에 대한 규제를 풀 것은 아니다. 개인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종사자의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자립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여야만 한다. 성매매에 대한 알선 역시 불법이다. 독일 형법에서는 누구든지 개인들이 모여 성매매에 종사하여 개인적이고 경제적 의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적인 성매매업을 유지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숙박, 거주, 그 외 부수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다. 단순한 숙박이나 부수적 서비스의 수준을 넘어 성매매 종사자들 개개인의 독립적, 경제적 생활을 ‘관리하거나 간섭하는’ 포주 행위는 불법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은 3년에서 5까지의 징

126)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성매매의 허가 및 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특정 질병의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역이나 벌금에 처한다¹²⁷⁾.

독일 형법은 “외국인의 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불법적인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것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⁸⁾. 만일 외국인의 약한 지위를 알고 있는 자를 협박 및 억압하여 그 사람을 성적 서비스에 종사토록 하거나, 21세 이하의 자를 인신매매 한 경우 형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로 늘어난다. 또한, “중한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폭력이나 협박, 위계를 사용하여 사람을 유괴하여 성매매에 종사시키거나, 전문적으로 외국인의 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매매 종사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모두 중한 인신매매로 규정하여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자를 착취하거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타인을 경제적 목적을 위해 감시 하는 것은 6개월에서 5까지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성매매 종사자의 개인적 존엄성과 그들의 개인적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그의 개인적인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의 삶의 수준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법적인 포주행위로 규정된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의 생활을 감시하거나, 그의 수입 및 성구매자의 숫자를 확인 하는 행위도 같은 맥락이다¹²⁹⁾.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자를 직업적으로 관리하는 행위 역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다. ‘강제된 성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형법 규정은 없으나, 독일기본법에(German Basic Law: 1949)에 의하면 “강제된 노동은 그들의 자유를 박탈 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 강제된 성매매 역시 위 조항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불법으로 여겨진다.

127) 형법 180조 a항

128) 형법 180조 b항

129) 형법 181조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성매매에 대한 광고는 기술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실제 그 법집행에 있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신문 및 섹스숍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광고를 접할 수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성매매 금지 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이는 독일 연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다. 인구가 2만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전체에 대해 성매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인구가 2만에서 5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전체 및 일부에 대해, 인구 5만 이상의 경우 지역 일부에 대해 성매매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많은 도시들이 각 도시마다 각자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뮌헨에서는 대부분의 시내권에서 성매매는 금지되며, 베를린에서는 대부분의 시내에서 성매매가 인정되며, 함부르크에서는 특정 시간 내에서의 길거리 매춘을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는 도심주변과 거주지역내에서의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일단 성매매 금지 구역이 선포되고 나면, 성매매 종사자들의 근무영역은 그 나머지 공간으로 한정되며, 이를 어길 경우 질서법에 의해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¹³⁰⁾, 지속적으로 법을 어길 경우 형법에 의해 6개월까지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성매매가 정치적 의제로 설정된 것은 1970년대 대폭적인 형법의 개정이 있을 때였다. 이때부터 형법상 성매매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다만 “공공장소내서의 불법적인 성적인 행위, 호객행위, 착취를 위한 포주행위”가 불법으로

130) 독일 질서법 120조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부터 성매매에 대한 법규정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다만 세금 및 국가 보건 정책과 맞물려 조금씩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법규정의 근본적 변화라기보다는 법원의 해석에 의해서였다. 1970년대까지 1885년의 부랑자 규제법 (Law against vagrancy) 뿐 아니라, 형법에 의해서도 성매매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1973년 대법원은 “부랑자법에 의해 경찰이 성매매 종사자, 포주, 성매매 종사자의 남자친구 등을 단속하는 것은 다른 국민들과의 처우에 대한 차별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함으로써 1974년 성매매에 대한 형법이 개정되게 되었다. 1974년 형법개정에 의해 성매매는 합법으로 인정되어 등록된 성매매 종사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규제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나 성매매 종사자가 경찰당국에 합법적으로 등록 하였을 경우에만 처벌받지 않는다. 등록은 자기 고용의 형태로만 인정되며 성매매 종사자를 성매매 목적으로 고용하거나, 이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오스트리아는 9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매매에 대한 법률은 그 주 법률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주 법률은 특정장소에서, 또는 특정시간의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길거리 성매매는 비엔나와 Lower Austria 이외의 7개의 주에서 금지되고 있다. 6개의 주 (Upper Austria, Salzburg, Carinthia, Tyrol, Vorarlberg, Burgenland)는 1980년대에 ‘집창촌에 대한 법률’을 실행하였는데, 성매매업소를 허가하고 성매매 업소의 업주는 시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의 자체단체에서는 성매매 업소 및 성매매 밀집지역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오스트리아 성매매 종사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불법으로 간주된다¹³¹⁾.

131) 2000년 10월 513명의 성매매여성들이 비엔나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20퍼센

2)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관한 규제

1974년 형법개정에 의해 성매매는 물론 성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포주 업무 역시 합법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포주 업무를 합법으로 인정함으로써 성매매 종사자들의 착취를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성매매 자체에 대한 엄격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자치주는 이에 반하는 입법을 하기도 하였다. 잘즈부르그 지역은 위 연방법에 반하는 자치입법을 공포 하여 경제적 목적의 포주업무를 범죄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비판들이 거세어지자, 1982년 대법원은 성매매 종사자를 착취하는 포주업 뿐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는 것 역시 기소될 수 있다는 판시를 내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3년 형법 개정은 형법 216조의 ‘착취’와 “성매매 종사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착취’는 1) 성매매 종사자의 수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2) 착취 및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포주업 3) 포주업의 범죄조직화 4)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여성에 대한 협박 등으로 해석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역시 금지 되어 있으며¹³²⁾, 성매매를 목적으로 종사자를 고용하는 행위¹³³⁾, 금전적 목적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¹³⁴⁾도 역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강제된 성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형법 규정은 없으나, 민사법에 의해 강제된 노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채무를 이유로 한 노동이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트는 오스트리아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10퍼센트 미만의 성매매종사자들이 등록하고 있다는 통계에 따르면 5,000명에서 7,000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비엔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85%가 이민자이며 대부분이 구소련에서 넘어온 여성들이다 (Ed Holt, “Police Crack Down on Sex Trafficking,” Inter Press Service, 6 February 2000)

132) 형법 209조

133) 형법 213조

134) 형법 215조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역시 범죄행위이며, 누구든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타인에게 성매매를 강제하는 것은 그 피해자의 나이 및 그 피해자가 이미 성매매 종사자였든지에 불문하고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지며, 만일 위 인신매매 행위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행해 졌다면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에 처해진다¹³⁵⁾. 2004년의 형법개정에 의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고용하거나, 거처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중개하는 경우 역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범죄에 그 수법으로 폭력이나 폭력적인 협박이 사용되었다면 형벌은 6개월에서 5년까지의 늘어난다.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범죄조직에 의해 행해졌거나,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폭력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¹³⁶⁾.

늘어나는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들과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1997년 외국인 법(Alien Act)에서는 불법적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규정이 추가 되었다. 누구든지 오스트리아의 영토 내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의 수입을 착취하는 자는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도적인 입장에서 위와 같이 인신매매 되어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 오스트리아의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거주권을 받게 되면 위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¹³⁷⁾.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오스트리아에서 성매매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성매매 자체는 비도덕적이며 성매매 종사자들은 ‘위험한 집단’들로 간주되

135) 형법 217조

136) 형법 217조

137) 외국인법 104조 내지 105조

어 왔다. 특히 성매매로부터 공공보건의 문제가 비중있게 다루어 졌으며, 성매매 종사자들은 에이즈와 같은 성병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로서, 연방법에 의해 성매매는 다른 직업과 같은 사회적 위치를 갖고 성매매 종사자는 다른 직업종사자와 같은 사회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법은 성매매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비엔나는 학교, 청소년 센터, 놀이터, 병원, 교회, 역 등에서 150미터 이내에서의 길거리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¹³⁸⁾ 성매매 업소는 불법이 아니나 성매매 업소가 있는 건물에는 반드시 성매매 종사자만이 살고 있어야 한다. 일반 거주자들과의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여 성매매 종사자와 분리되어 생활하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¹³⁹⁾. 즉,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들 자신의 아파트에서 행해지는 성매매는 금지된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연방경찰의 성매매 관련 독립부서에 등록 해야만 하며¹⁴⁰⁾, 그들의 지문과 사진이 보관된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매매 업으로 등록할 때 뿐 아니라 도시를 떠날 경우에도 연방경찰에 신고해야만 한다¹⁴¹⁾. 이외에도 성병확산 방지법 (Sexual Transmitted Disease Law)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당국에 일주일에 한번씩 출두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공중보건의에 의해 성병이 없음을 확인 받아야만 그 등록이 유효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기초적인 검사와 건강검진이 마치고 나면 성매매 종사자들은 사진이 인쇄된 신분증을 발급받게 되

138) 비엔나 성매매 관련법 (Vienna's Prostitution Law) 4조

139) 비엔나 성매매 관련법 5조

140) 등록제를 유지하는 주는 Vienna, Burgenland, Upper Austria, Salzburg, Carinthia 등 5개 주이다.

141) 성매매 종사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비난에 따라 1991년 성매매종사자의 기록은 그 등록을 취소한 후 6개월 이내에 폐기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첨가되었다.

며, 성매매 종사자들은 이를 언제든 휴대해야만 한다. 성병감염이 확인되면 위 신분증은 보건당국에 의해 압수되며 그 치료가 끝난 후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¹⁴²⁾.

성매매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성행위를 공공에 광고하면서 이것이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불쾌감을 주는 경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¹⁴³⁾. 성매매에 대한 광고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이 역시 공공의 불쾌감을 일으킬 때 처벌될 수 있다.

제 2 절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영향을 받은 규제주의 -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성매매가 강요되지 않았다면 즉 성매매를 제공하는 자가 스스로 선택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성매매가 범죄로 간주된 적은 없었다. 2000년 10월 성매매 개인뿐 아니라 성매매 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도 삭제함으로써 네덜란드는 성매매를 사회의 다른 노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개정은 자발적인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성매매 종사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안정시키고,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그 통제에 실효성을 더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강요된 성매매, 미성년자의 성매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성매매를 강력한 단속을 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성인, 이에 합의하여 금전을 지불하고 성구매를 하는 성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존재 하지 않으며, 다른 직업이나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법적인 보호와 세금납부의 의무를 갖게 되었다.

142) 비엔나, Lower Austria, Upper Austria, Styria, Carnithia는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에이즈 및 성병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성병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143) 형법 219조

1. 성매매에 대한 규제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는 성매매가 여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의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근로법 (Working Conditions Act), 근로시간법 (Working Hours Act), 외국인 노동법 (Labour Act for Aliens)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 역시 기타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시간, 최소임금, 노동3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보장의 혜택 역시 받을 수 있다. 특히 UWV (Social Security Agency)는 성매매업에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성매매업을 소개시켜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허용은 적합한 거주권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최근 늘어나기 시작한 동유럽으로부터의 성매매 종사자 유입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경우처럼 노동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유급노동이 가능한 ‘영구거주권’을 가진 사람만이 네덜란드에서 성매매에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다.

2. 성매매 관련 착취에 관한 규제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영리적으로 착취하거나, 다른 형태로의 성적착취는 허용되지 않는다¹⁴⁴⁾. 성적 착취에는 성적 노동이나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 기타 조건에 의해 의무화시키는 것, 성적 노예로 삼는 것, 성적 노예 및 강제적 성서비스 제공에 준하는 행태, 성매매 업소간의 성매매 종사자 매매가 포함된다. 강요된 성매매 및 미성년에 대한 성매매 역시 불법이다.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거나

144) 형법 273조 a항

착취하는 행위, 이외에도 성매매에 종사시키기 위해 강요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에 종사시키기 위해 설득하는 행위, 해외로의 성매매 취업을 위해 종사자들을 모집하거나 인신매매 하는 행위¹⁴⁵⁾는 모두 6년 이하 징역이나 이에 준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요된 성매매는 “폭력 및 폭력에 대한 협박을 통해, 또는 당사자 간의 실제적 관계에서 오는 권위를 이용하여, 또는 위계를 사용하여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인신매매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다양한 형태로의 착취를 말하나, 네덜란드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규제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인신매매 했을 때 성립하며 이는 주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나, 국내 내에서의 인신매매 역시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폭력, 협박, 권위의 남용을 이용하여 타인을 성매매에 종사케 하기 위해 인신매매 하는 것, 외국에서 성매매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타인을 구인하거나 납치하는 것, 또는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인신매매 하는 것을 모두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¹⁴⁶⁾. 만일 위의 범죄가 두 명 이상이 합동으로 한 경우 및 범죄단체에 의해 행해진 경우, 그 피해자가 16세 이하인 경우, 위 범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야기 한 경우 그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된다¹⁴⁷⁾.

불법채류자의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나 이것이 강요된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에 종사시키기 위해 설득하는 것은 위계나 폭력이 개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이며 역시 6년 이하 징역이나 이에 준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가 16세 이하거나, 두

145) 형법 250조 a항

146) 형법 250조 a항 내지 c항

147) 만일 피해자가 위 범죄를 경찰에 신고 할 경우 수사, 기소 공판까지 기간동안 임시적인 거주증을 받게 되며 (Aliens Act 2000: section 27), 그 기간동안 피해자 및 증인의 신분이 보호된다.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위에 열거한 죄를 범한 경우 8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착취 및 강요의 행위가 심각한 상해 및 생명에 위협을 줄 경우 12년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¹⁴⁸⁾.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규제

형법에 의해 성매매에 관련된 폭력, 강요, 착취 등은 규제되어 있으나,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한 규제는 지역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 지역자치단체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허가 및 규제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 연합(Association of Netherlands Municipalities)은 성매매 업소, 섹스샵, 개별적 성매매 종사자들에 관한 규제사항을 발표했다. 이러한 규제사항에는 성매매 업소의 최소규모, 안전, 소방 및 위생문제를 포함하고 있다¹⁴⁹⁾. 예를 들면 모든 성매매 업소는 위험 발생을 알리는 비상벨, 온냉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피임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 단체는 성매매 업소 허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는 위 지방자치단체 연합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으며 기존 존재해 왔던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을 인정하고 새로운 성매매밀집지역을 허가해 주지 않는 방식의 현상유지 정책 (status quo policy)를 견지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소방, 건강, 사회복지사, 경찰 관계자들이 합동하여 허가규제사항을 통제하고 감독하고 있다. 건

148) 형법 257조

149) 성매매 업소에 대한 일반적 규제가 해제된 이후, 많은 성매매 종사자들은 직업 환경의 위생 정도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매매 직업에서 발생하는 위험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성매매 종사자들은 직업 환경의 안정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고객으로부터 협박 및 폭력을 경험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12%의 성매매 종사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폭력의 노출 정도에 대해서는 성매매의 합법화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Venicz, L and Varwesenbeeck, I. (2000) "Something's about to change in prostitution", NISSO)

축 및 건설담당부서에서는 성매매 허가 여부, 건축 및 주거허가 여부에 대해 관할하며, 소방담당부서에서는 소방안전 설비에 대해 감독한다. 의료 및 건강부서에서는 특히 전염 가능한 성병예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몇몇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위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에 대해 성병예방을 위한 의료검진을 의무화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여부에 부합하지 않는 성매매업소는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 5 장 유럽의 성매매 관련 법률 비교

본장에서는 3장 4장에서 살펴본 각국의 성매매 관련 법규정을 바탕으로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규제, 제3자에 대한 규제,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 각국의 법규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같은 폐지주의 및 규제주의를 기반으로 있는 나라들도 그 개별적인 사안에 맞추어 새로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추가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성매매 관련 철학 및 담론이나 그 분류기준에 순수하게 부합하진 않는다. 같은 철학적 바탕을 기반을 두어도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그 용인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 형벌의 정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 1 절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규제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규제란 성 판매자 및 성 구매자에 대한 규제이다. 이는 성매매의 도덕적이거나 법적 비난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형법적 규정과,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납세자로서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노동법적 또는 행정법적 규정으로 나누어 질수 있다.

성 판매자에 대한 형법적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성 판매자가 폐지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인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규제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인 경우 등록하지 않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경우, 또는 성매매 가능지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유럽지역의 성 판매자는 각 국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매매 행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 글의 연구대상이 되는 10개국 모두 개인적인 성매매에 대하여는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같이 규제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에서는 허가

된 지역에서의 공개적인 성매매에 대해서도 처벌되지 않는다. 성 구매자 역시 스웨덴을 제외한 국가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성 구매자는 개인적인 성 구매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다.

성 판매자에 대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는 성 판매자가 다른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전적인 사회보장의 책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성 판매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및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함께 갖는다. 다만,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성 판매자의 소득은 납세의 대상이 되나, 네덜란드와 같이 다른 노동자와 같은 지위를 갖지 못하며 사회보장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표 3.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형법 규정 】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판매자	처벌되지 않음							허가된 지역내에서 처벌되지 않음		
구매자	처벌	처벌되지 않음								

제 2 절 성매매 관련 제 3자에 대한 규제

성매매 관련 제 3자에 대한 규제는 주로 성매매를 통한 착취와 억압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매매를 통한 착취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중 10개국 이 모두 금지하는 착취의 형태는 폭력, 협박, 위계를 통해 타인을 성매매에 종사케 하는 것, 성매매 행위를 그만두려는 자를 방해하는 것, 성매매 종사자의 수익에 대한 부

당한 착취로 나눌 수 있다¹⁵⁰). 또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역시 10개국 모두 금지하고 있는 성적인 착취의 형태이다. 성매매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타인을 구인하거나 납치하는 것, 외국인의 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불법적인 성매매에 종사시키는 것, 성매매를 목적으로 구인하여 여성을 일상적인 주거지로부터 이동시키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 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성매매 업소를 유지하는 것은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태리, 독일이 금지되어 있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은 성매매 업소의 운영이 허용된다. 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숙박, 기타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3자의 이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스웨덴, 프랑스, 이태리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제3자가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이를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의 목적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태리, 핀란드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은 이를 허용한다. 성매매 종사자의 수익으로 생활하는 성매매 종사자의 동거인, 가족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착취로 이해하여 이를 처벌하는 국가가 있다. 영국, 스웨덴, 이태리가 성매매 종사자의 수익을 사용하는 자를 처벌한다.

【 표 4. 성매매 관련 착취에 대한 해석 】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강제된 성매매, 경제적 착취,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등 모두 금지										

150) 이중 성매매 종사자의 수익에 대한 착취의 개념은 각국의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 독일의 경우 성매매 종사자의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해치지 않는 경우만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성매매 업소 운영	금지						허용			
부수적 서비스 제공 (금전적 이득 관계없음)	금지		허용	금지			허용	금지	허용	
부수적 서비스 제공 (금전적 이득이 있을 경우)	허용	금지	허용	금지	허용		금지	허용		
장소 제공	금지						허용			
성매매 수익으로 생활	금지	허용	금지	허용	금지		허용			

1. 착취 및 성매매 강요

최근 성매매가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의 일종으로 생각되어 지면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겪는 착취, 억압, 폭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등한시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매매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와 사회적 낙인화로 인해 성매매 종사자는 여전히 법적으로 취약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¹⁵¹⁾. 성매매 여성들의 취약한 지위는 이윤을 추구하는 성 산업 관련자들에게 착취와 억압의 좋은 배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고 이들로부터 그 수익을 얻는 포주의 경우 성매매 종사자와의 권력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인해 특히 그 착취의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태리에서 위와 같은 착취의 가능성이 있는 성매매 업소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성매매 종사 여성의 80%에서 95%까지가 성매매 업소 포주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¹⁵²⁾, 이중 53%의 여성이 포주에 의해 성매매에 업에 종사하

151) Sanders, T. (2004) Sex Work. Risky Business, Cullompton: Willan

152)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¹⁵³⁾.

성매매를 통한 착취 및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위 유럽 10개국에서 모두 금지 하고 있다. 각국에서 조금씩 그 법적인 용어를 달리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 착취 및 강요는 폭력, 협박, 위계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를 착취하거나 타인을 성매매에 종사토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기로 한다. 위계에는 성매매 종사 조건, 급여, 직업 환경에 대한 위계를 포함한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협박 및 폭력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 프랑스가 7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함으로써 가장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프랑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및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15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이러한 범죄가 범죄단체에 의해 행해진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그 가중처벌에 있어서도 가장 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국가의 경우 영국과 이탈리아가 7년 이하 그 외 국가의 경우가 4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었다.

【표 5. 성매매 강요 및 착취에 대한 각국의 형벌 규정】

분 류	처 벌	비 고
스웨덴	4년 이하	중대한 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2년에서 6년 가중처벌
아일랜드	6개월에서 5년 이하 징역	
영국	6개월에서 7년 이하 징역	
프랑스	7년 이하 징역,	미성년대상, 피해자가 특별히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 가중, 15세 이하일 경우 15년 이하로 가중, 범죄단체에 의한 경우 20년

153) Evelina, G. (1987) Whiper Oral History Project, Minneapolis, Minesota

분 류	처 별	비 고
핀란드	3년 이하의 징역	
이태리	2년에서 7년 이하 징역	
스페인	2년에서 4년 이하 징역	공무원에 의한 경우 6년에서 12년 가중
오스트리아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	
독일	6개월에서 5년 이하 징역	
네덜란드	6년 이하의 징역	

2. 인신매매

인신매매란 용어는 흔히 범죄단체나 범죄자이 여성을 납치하여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강제 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유럽의 각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신매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외국에 살고 있는 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근무조건 및 급여를 속이거나, 직업의 종류를 속여 여성을 모집한 후 이들을 여성의 원래 주거지에서 옮기는 행위를 포함한다. 동유럽 및 중앙유럽에서 인신매매되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대부분의 여성들은 클럽에서 댄서 및 종업원의 구인광고를 보고 서유럽으로 건너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역시 인신매매에 속한다. 또한 인신매매는 단순히 타인의 주거지를 옮기는 행위 뿐 아니라, 외국인으로서의 약한 법적 지위를 아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타인을 착취하는 행위 역시 인신매매로 규정되고 있다. 즉, 인신매매는 타인의 의지에 반해 그 수익의 착취를 위해 타인의 주거지를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 목적이 되는 국가에의 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입국 여부는 불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이 되는 직업, 그 근무조건, 급여를 속이는 행위, 타인

의 주거지를 옮기도록 강제하는 행위, 폭력, 협박 다른 형태의 강제를 이용하여 타인의 착취를 강화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¹⁵⁴⁾.

구소련의 붕괴, EU 가입국의 확산으로 인해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유입되는 인신매매된 피해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여성의 성매매 종사자가 자국 성매매 종사자를 그 수에서 압도하고 있다¹⁵⁵⁾.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최초 타일랜드 및 필리핀 출신의 아시아 여성들이 주 피해자였다. 이후 도미니카 및 콜롬비아와 같은 남미의 여성들이, 최근에는 가나와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있다¹⁵⁶⁾. 1992년까지 유럽에서 동유럽 및 중앙유럽의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보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 500,000명의 여성들이 매년 유럽으로 인신매매되어 온다는 비공식 통계가 있으며 2/3이상이 중앙 및 동유럽에서 살던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¹⁵⁷⁾. 또한 성매매 여성 중 3/4 이상이 25세 미만이며¹⁵⁸⁾, 특히 중앙 유럽의 경우 15세에서 18세 사이의 피해자가 가장 많다¹⁵⁹⁾.

154)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1995),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The growing exploitation of migrant women from central and eastern, http://66.102.9.104/search?q=cache:1JR_GW490HEJ:www.iom.int/DOCUMENTS/PUBLICATION/EN/MIP_traff_women_eng.pdf+Trafficking+and+Prostitution:+The+growing+exploitation+of+migrant+women+from+central+and+eastern&hl=ko&gl=uk&ct=clnk&cd=1

155) Brussa, (1996), "Trafficking of Women to the European Union: Characteristic, Trends and Policy Issues," European Conference on Trafficking in Women, (June 1996), IOM,

156) De Stoop, C. (1994) 'They Are So Sweet, Sir', Limitless Asia Publications, Leuven, Belgium

157)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ichael Specter, "Traffickers' New Cargo: Naive Slavic Women," New York Times 11 January 1998

158) 중앙 및 동유럽의 피해자들은 과거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인신매매 피해자와 비교된다. 개발도상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동유럽의 피해자들에 비해 나 MI이가 많고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1995),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The growing exploitation of migrant women from central and eastern)

159) Dutch NGO of women (1996), "Trafficking of Women to the European Union: Characteristics, Trends and Policy Issues," European Conference on Trafficking in

이는 과거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인신매매보다 그 비용이 적고 여성들은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되며 관광비자로 입국이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다.

중앙 및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이주된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면서 겪는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착취나 억압은 자국 성매매 종사자들이 겪는 그것보다 훨씬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 형벌 또한 다른 목적의 인신매매보다 중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즉시 추방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의 형법적 처벌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¹⁶⁰⁾.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은 성매매 종사 여부에 대해 모른 채 서유럽에 도착하거나 알더라도 그들의 근무조건 및 임금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다. 자국에서 서유럽으로의 교통, 국경 통과 및 구인 등 다양한 종류의 빚을 떠안은 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면서 이들의 수입은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착취된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여권은 인신매매자에 의해 보관되고 이들의 자유는 극심하게 제한된다. 인신매매 피해자인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그 약한 법적 지위 때문에 그들이 받고 있는 착취 및 억압에 대해 형사 절차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이는 그들의 착취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경우 이태리가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가장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외 아일랜드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종신형을 규정하고

Women, (June 1996),

160) Working Group on the Legal Regulation of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 (2004), Purchasing Sexual Services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Legal Regulations and Experiences, http://66.102.9.104/search?q=cache:_NlwkAciHMgJ:www.odin.no/filarkiv/232216/Purchasing_Sexual_Services_in_Sweden_and_The_Nederlands.pdf+Purchasing+Sexual+Services+in+Sweden+and+the+Netherlands:&hl=ko&gl=uk&ct=clnk&cd=1

있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한 죄로 다스리고 있다. 그 외 스웨덴, 영국, 핀란드, 스페인이 7년에서 12년 이하의 징역을,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가 5년에서 6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표 6.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의 형벌 규정】

분 류	처 벌	비 고
스웨덴	2년에서 10년 이하 징역	
아일랜드	1년에서 12년 이하 징역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중신형
영국	6개월에서 14년 이하 징역	
프랑스	7년 이하 징역	폭력,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범죄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10년 이하 가중)
핀란드	2년에서 10년 이하 징역	
이태리	8년에서 20년	
스페인	4년에서 8년	
오스트리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경제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중대한 해를 준 경우, 범죄단체에 의해 행해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가중)
독일	5년 이하 징역	피해자가 21세 이하일 경우 6개월에서 10년 이하 징역
네덜란드	6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가중처벌 10년 이하 징역

유럽국가의 대부분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허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이며 이들은 강제출국의 대상이 된다¹⁶¹⁾.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강제 출국 될 경

161) 다만 네덜란드에서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국적인중 충분한 수입을 증명하는 자에 한하여 자기 고용 형태의 노동허가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태리, 영국, 오스트리아에서 외국인이 적법한 노동허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규제되지 않고

우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용이 하지 않고,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인 이유로 그 피해자에게 임시적인 거주허가를 주는 경우가 있다.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그 형사절차에 도움을 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시 거주 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피해자는 영구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협조 여부에 대해 고려할 시간적 여유를 위해 3개월간의 임시거주 허가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대해 협조 할 경우 형사사법 절차 기간동안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만료 후에는 영구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태리는 외국인이 심각한 학대 및 착취의 상황에 처해 있고, 그의 안전이 형사절차로 인해 위협에 빠져있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간의 임시 거주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협조 여부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도 인신매매의 피해자에게 임시 거주 허가를 할 수 있으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인신매매의 피해자 또는 그 증인의 안전을 위해 증인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이태리는 증인 보호를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및 영국은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아일랜드의 경우 아일랜드 증인보호 프로그램 (Irish Witness Security Programme)을 통해, 영국은 경찰의 책임 하에 인신매매의 피해자 및 증인을 위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는 증인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프로그램을 유지하진 않으나, 현재 핀란드는 위 증인보호 법률의 입안을 위해 논의 중이다.

있으나, 다만 이들이 노동허가에 기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 추방의 대상이 된다. 오스트리아에서 예외적으로 사증에 기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 6개월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EU 국가의 시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추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미성년자 성매매

WCCSEC (World Congress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1996)에 의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란 법적인 미성년자¹⁶²⁾가 금전이나 숙박, 음식, 옷, 안전, 약, 교통편 등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제공하거나 타인과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에 의한 성매매와 이로 인한 상업적이고 성적인 착취, 사회적 비용은 매우 심각하다. 우선 성매매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교육, 합법적인 고용에 접근하지 못해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찾지 못하게 된다¹⁶³⁾. 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중심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약물, 자살 시도, 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매매 종사는 그들의 성적 정체성과 바람직한 기준의 성립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¹⁶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학대받은 청소년들은 죄책감, 비난, 공포에 시달리며 이는 자기 존중감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보고 되고 있다¹⁶⁵⁾.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법적 규정은 성 구매자에 대한 규정과 미성년 성 판매자에 대한 착취자에 대한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반면 그 외 국가에서는 성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및 아동과의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 처벌하며 청소년

162)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에서 18세 이하를 모두 미성년자로 통칭하며,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14세 이하를 아동, 14에서 18세를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163) Deisher, R. 외 2 (1982), "The Adolescent Female and Male Prostitute", *Pediatric Annals*, vol 11, no 10, pp. 819-25.

164) Bittle, S. (2001), *Youth Involvement in Prostitution: A Literature review and annotated bibliography*, Research and Statics Division of Canada

165) Deisher, R. 외 2 (1982), "The Adolescent Female and Male Prostitute", *Pediatric Annals*, vol 11, no 10.

및 아동에 대한 성매매 조장, 권유, 알선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스웨덴에서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독일에서는 16세 이하와의 성매매를 알선, 조장, 매개 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하며, 14세 이하와의 성매매는 성매매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로 인정하여 6개월에서 10년까지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아일랜드에서는 17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장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하며, 17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성매매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한다. 15세 이하 소녀와의 성관계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며,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녀와의 성관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2세 이하 소녀와의 성관계에 대해 12년, 12세부터 16세 사이의 소녀와의 성관계에 대해 8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스웨덴에서도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한다. 영국¹⁶⁶⁾, 몇몇 국가는 아동 성매매를 위한 섹스 관광을 규제하기 위하여, 아동 성매매를 위한 섹스 관광지에 대하여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표방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 3 절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는 성 판매자의 길거리 호객행위, 성 구매자의 길거리 성매매 탐색행위, 성 매매에 대한 광고, 성 판매자의 의료 검진 여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성판매자의 호객행위 및 성 구매자의 탐색행위는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지만 이는 성매

166) 영국의 성범죄법에 따르면 영국이외의 지역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하여도 영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매에 자체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성매매가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한 처벌이므로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로 본다.

성 판매자의 길거리 호객행위는 사회질서 유지 및 지역 공동체 보호라는 측면에서 처벌되고 있다. 길거리 호객행위를 처벌하는 나라 중에서도 적극적인 호객행위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소극적인 호객행위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¹⁶⁷⁾. 호객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이며, 이중 아일랜드와 영국은 소극적 호객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다. 이외 성매매에 대한 광고는 아일랜드, 스웨덴, 프랑스, 이태리, 독일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성구매자가 그 판매자를 탐색하는 행위에 대해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이 이를 범죄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영국 및 아일랜드가 성 구매자의 탐색행위로 인해 지역 여성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추행의 가능성 및 청소년의 교육, 성 구매자의 탐색행위로 인한 성 판매자의 밀집 가능성, 성매매등과 관련한 범죄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성 구매자의 사회적 가시성을 낮추기 위해 성 구매자의 탐색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성 구매자가 성매매를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 여성 지위 향상을 저해한다는 여성주의적 측면에서 그 판매자의 탐색행위를 범죄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차이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질서유지적 측면에서의 규정이외에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규정역시 존재 하는데 오스트리아의 경우 성매매 종사자의 의료검진을 통해 성병유무를 확인한 후 성병이 없을 경우에만 성매매 종사자의 등록을 받아들이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167) 호객행위는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위하여 그 구매자를 탐색하거나 가격을 흥정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 소극적 호객행위는 몸짓, 표정, 옷차림만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거래를 암시할 수 있으면 호객행위로 인정한다.

【 표 7.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호객행위 (적극적)	허용	금지			허용						
호객행위 (소극적)	허용	금지	허용								
성 판매자 탐색행위	금지			허용							
광고	금지	허용	금지	허용	금지	허용					
의료검진	규제없음							의무	규제없음		

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유럽 10개국의 성매매 관련 법률의 차이와 공통점을 성매매에 대한 태도,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성매매 관련 담론들은 범죄학의 분야에서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원인론적 접근에서, 이후 여성주의 영향을 받아 성매매와 관련된 여성의 권리 및 착취에 관심을 갖는 급진주의적, 자유주의적, 포스트 페미니즘적 여성주의, 그리고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두는 사회보호적 기능을 중시하는 담론들로 발전하여 왔다. 성매매를 둘러싼 철학적이거나 기능적인 담론들은 성매매를 향한 공동체의 인식과 우려들에 대응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성매매 관련 법률의 고전적인 분류 방식은 특히 유럽국가들의 다양한 법체계를 논의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낸다. 분류 대상이 된 10개국 중 금지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없었으며, 폐지주의 및 규제주의를 바탕으로 서로 조금씩 영향을 주고받으며 순수한 의미에서 변질하여 수정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여성주의 및 사회보호적 담론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법률들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핀란드와 이태리는 기존의 폐지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핀란드와 이태리는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 반면, 성매매 관련된 착취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가 기존의 폐지주의적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보호적 담론 중에서도 질서유지의 영향을 크게 받아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영국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성 판매자를 탐색하는 행위가 지역 공동체에 불안감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성판매자의 탐색행위를 최초로 범죄화 하기도 하였다. 스웨덴은 폐지주의적 입장을 바탕으로

급진적 여성주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한 국가이다. 급진적 여성주의에서 주장하듯 성매매를 지속시키는 구매자, 착취자,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반면 성판매자는 사회의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하고 있었다. 스페인은 폐지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폐지주의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반면, 스페인에서는 성매매 종사자의 일할 권리를 존중하여 성매매 종사자의 고용행위, 성매매 업소 운영행위 등을 비범죄화 하였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는 기존의 규제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이다. 독일, 오스트리아가 고전적 규제주의로 분류된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도 폐지주의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와 관련된 착취를 범죄화하고 있으나, 성매매의 허가, 성매매 종사자의 등록 등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주의로 분류된다. 네덜란드는 성매매에 대한 형법적 규제를 가장 적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네덜란드는 성매매를 직업의 자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같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매매 허가지역 및 금지지역을 선포함으로써 규제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폐지주의와 규제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위 유럽 10개국은 개인적인 성매매 자체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규제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에서는 허가지역 이외의 성매매, 무허가 성매매 업소, 무등록 성매매 종사자등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스웨덴을 제외하고 10개국 모두는 성매매가 국가로부터 용인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용인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각각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 국가에 의한 성매매의 용인은 인정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성매매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 구매자를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매매 관련 착

취에 대해서는 10개국 모두가 그 처벌을 명시화 하고 있다. 폭력, 억압, 협박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종사에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및 그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 모두 불법적 포주 업무로 처벌대상이다. 다만 성매매에 대한 조력, 폭력이나 착취의 수단이 없는 성매매 종사자로부터의 수익 분배, 고용 등에 대해 범죄화 및 비범죄화의 차이가 있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는 실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길거리 성매매에 대한 논의는 성매매 관련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중시하는 규제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으나, 성매매에 대한 폐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이 호객행위 및 성 판매자 탐색행위를 범죄화 하고 있으며, 이외 스페인, 핀란드 에서도 길거리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범죄화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 글은 유럽 10개국의 성매매 관련 담론들과 그 입법 형태 그리고 자세한 성매매 관련법률들을 비교해 봄으로서 최근 유럽국가들의 성매매 관련 입법 행태와 그 향후 추세 등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한국의 성매매 관련 법률을 둘러싼 담론들과 입법 목표 설정과 입법 구조에 대해 기초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성매매 관련 법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집행의 현실과 바람직한 입법목표의 실현에 대해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외국문헌

-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Bell, S. (1994), *Reading, Writing, and Rewriting the Prostitute Bo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p 110.
- Benjamin, H and R. Masters (1964), *Prostitution and Morality: A definitive report on the prostitute in contemporary society and an analysis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suppression of prostitution*, London: Souvenir Press
- Bindel, J and Kelly, L. (2003), “A critical examination of responses to prostitution in four country: Victoria, Australia, Ireland, the Netherlands and Sweden”, London: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 Bittle, S. (2001), *Youth Involvement in Prostitution: A Literature review and annotated bibliography*, Research and Statics Division of Canada
- Brussa, (1996), “Trafficking of Women to the European Union: Characteristic, Trends and Policy Issues,” European Conference on Trafficking in Women, (June 1996), IOM,
- Carrington, K. (1993), *Offending Girls: Sex youth and justice*, Sydney: Allen and Unwin, p. xiv

참 고 문 헌

- Church, S., Henderson, M., Barnard, M. and Hart, G. (2001), 'Violence by clients towards female prostitutes in different working setting: Questionnaire survey,' *British Medical Journal*, vol. 332, pp. 524-25.
- Code, L. (1995), 'How do we know? Questions of methods in feminist practice,' in S. Burt and L. Code (eds.), *Changing methods: Feminist transforming practice*, Peterborough, Ontario: Broadview Press, pp. 33-44.
-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 (1957), *Report of the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 Danna, D. (2000), "Organizations active in the field of prostitution in a comparative Wester European Perspective", presented at Workshop in the ECPR Joint session 2000: Prostitution and international trafficking political issues
- Durkheim, E. (1965), *The rules of the sociological method*, New York: The Free Press.
- Davis, K. (1937), 'The Sociology of Prostit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 pp. 746-55.
- Deisher, R. 외 2 (1982), "The Adolescent Female and Male Prostitute", *Pediatri Annals* ,vol 11, no 10, pp. 819-25.
- De Stoop, C. (1994) 'They Are So Sweet, Sir', *Limitless Asia Publications*, Leuven, Belgium

- Dutch NGO of women (1996), "Trafficking of Women to the European Union: Characteristics, Trends and Policy Issues," European Conference on Trafficking in Women, (June 1996),
- Evelina, G. (1987) Whiper Oral History Project, Minneapolis, Minesota
- Eriksson, J. (2005), "The Swedish Model-Arguments and Consequence", presented at prostitution in Europe in Berlin
- Esohe Aghatise (2002), "Trafficking for prostitution in Italy: concept paper, 2002", Expert Group Meeting on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18-22 November 2002 Glen Cove, New York, USA
- Farley, M. (2004), "Bad for the Body, Bad for the Heart :Prostitution Harms Women Even if Legalized or Decriminalized", Violence Against Women, Vol. 10 No. 10, pp. 1087-1125)
- Finnegan, F. (1979), Poverty and Prostitution: A study of Victorian prostitutio in York, Cambri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ori, (1989), "Human Rights: Simple Human Respect: West Germany, in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hores", G. Phenterson (Ed), Seattle: Seal Press
- Freeman, J. (1990) 'The feminist debate over prostitution reform: Prostitutes' rights group, Radical feminists and the (Im) possibility of Consent,' Berkeley Women's Law Journal, vol. 5, pp. 75-109
- Hakkine, A. (1995), Rahasta-vaan ei rakkaudesta. Prostituutio Helsingissa 1967-1939, Keuruu: Ptava

참 고 문 헌

- Hoigard, C. and Finstad, L. (1992), *Backstreets: Prostitution, Money and Love*, Cambridge: Polity.
- Holt, E.(2000) “Police Crack Down on Sex Trafficking,” *Inter Press Service*, vol 6)
- Hubbard, P. (2004) ‘Cleansing the Metropolis: Sex work and the politics of Zero Tolerance,’ *Urban studies*, vol. 41, no. 9, pp. 1687-702
- The International Prganisatino for Migration (1995),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The growing exploitation of migrant women from central and eastern*, http://66.102.9.104/search?q=cache:1JR_GW490HEJ:www.iom.int/DOCUMENTS/PUBLICATION/EN/MIP_traff_women_eng.pdf+Trafficking+and+Prostitution:+The+growing+exploitatio+n+of+migrant+women+from+central+and+eastern&hl=ko&gl=uk&c t=clnk&cd=1
- Jagger, A. M. (1997), ‘Contemporary western feminis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y*, vol. 3, no. 2, available at http://acws.ewhawoman.or.kr/acws/03_ajws/ajws_main.php?part=view&admin=&menu=3&sub_menu=5&book_id=891&sel division=&key=sch&sch=writer&keywd=jagger
- Jarvinen, M. (1990), *prostitution I Helsingfors: en studie I kvinnokontroll*, Abo: Abo Akademis forlag
- Jenness, V. (1990), ‘From Sex as Sin to Sex as Work: COYOTE and the Reorganisation of Prostitution as a SocialProblem,’ *Social Problems*, vol. 37, no. 3, pp. 403

- Kantola, J. and Squires, J. (2002), "Discourse Surrounding Prostitution Policies in UK", presented in the PSA Annual conference, Aberdeen, 5-7 April 2002
- Kantola, J and Squires, J. (2002), "Prostitution policies in Britain, 1982-2002",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2-82
- Kvale, S. (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London: Sage
- Lemert, E. (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Hill
- Lombroso, C. and Ferrero, W. (1895), The Female Offender, London: Fisher Unwin
- Mackinnon, C. A. (1996), 'Prostitution and Civil rights, in D. K. Weisberg (ed.), Applications of feminist legal theory to women's lives: sex, violence, work, and reproduction,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에서 재인용
- Matthews, R. (1986), 'Beyond Wolfenden? Prostitution, Politics and the Law' in R. Matthews and J. Young (eds.) Confronting Crime, London: SAGE Publication.
- Matthews, R. (1992). "Replacing 'broken windows': crime, incivilities and urban change". In R. Matthews, & J. Young (Eds.), Issues in realist criminology. London: Sage, pp. 19-50)
- McLeod, E. (1982), Women working: Prostitution Now, London: Croom Helm

참 고 문 헌

-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3), "Prostitution in Sweden 2003-Knowledge, Beliefs & Attitudes Of Key Informants", pp. 9-11
- Phonenix, J. (1999), Making sense of prostitution, London: Macmillan Press
- Phoenix, J. (2000), "Prostitute Identities: Men, Money and Violen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0, pp. 37-55
- Raphael, J and Shapiro, D. (2004) "Violence in Indoor and outdoor Prostitution venues", Violence Against Women, Vol. 10 No. 2, pp. 126-139
- Roberts, N. (1992), Whores in History, London: Polity
- Sanders, T. (2004) Sex Work. Risky Business, Cullompton: Willan
- Sibley, D. (1995), Geographies of Exclusion: Society and Difference in the West, London: Routledge
- Smart, C. (1977) Women, Crime and Criminology, London: RKP.
- Sullivan, M. (2005), "What happens When prostitution becomes work?",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 Valiente, C. (2002), "State feminism and central state debates on prostitution in post-authoritarian Spain",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05-224
- Varsa, H. (1986), Prostitution nakymaton osa: miesasiakkaat:: lehti-ilmoit-teluprostitution asiakkaista, Helsinki: Tasa-arboasian neuvottelukunta (Naistutkimusmonisteita)

- Venicz, L and Varwesenbeeck, I. (2000) “Something's about to change in prostitution”, NISSO
- Walklate, S. (2000). “Trust and the problem of community in the inner city”. In T. Hope, & R. Sparks (Eds.), *Crime, risk and insecurity*, London: Routledge, pp. 50-64
- Wijers, M. (2001) “Criminal, Victim, Social evil or working girl: legal approaches to prostitution and their impact on sex workers”, presented at Seminario Internacional sobre Prostitucion, Madrid 21-23 Junio 2001, Instituto de la Mujer, UNED
- Wilkinson, R. (1955), *Women of the street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common prostitute*, London: British Social and Biology Council
- Working Group on the Legal Regulation of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 (2004), *Purchasing Sexual Services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Legal Regulations and Experiences*, http://66.102.9.104/search?q=cache:_NlwkAciHMgJ:www.odin.no/filarkiv/232216/Purchasing_Sexual_Services_in_Sweden_and_The_Nederlands.pdf+Purchasing+Sexual+Services+in+Sweden+and+the+Netherlands:&hl=ko&gl=uk&ct=clnk&cd=1
- Yvonne Svanstrom (2004), “Criminalising the john - a Swedish gender model?”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press, pp. 225-45

■ 국내문헌

장필화 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2001, 여성부